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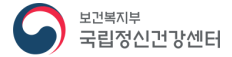
※ 본 교육 내용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서식 등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입·퇴원 실행 매뉴얼과 국립정신병원 홈페이지 질의 응답지 게재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절차 안내



※ 본 교육 내용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서식 등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입·퇴원 실행 매뉴얼과 국립정신병원 홈페이지 질의응답지 게재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목 차

1교시(20분) •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2교시(60분) • 입원 유형 별 절차

- 자의입원
-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응급입원

3교시(40분) • 2인 의사 진단 제도
• 입퇴원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입퇴원 관련 벌칙

1교시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법 개정 배경

☑️ 정신질환자의 높은 비자의 입원을, 장기입원 및 빈번한 재입원



비자의 입원률

전체 입원의
65%

독일 17.1%
영국 13.5%
이탈리아 12%



입원기간

평균 207일

프랑스 35.7일
독일 26.9일
이탈리아 13.4일

☑️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제외의한입원) 위험성 문제제기



보호입원

보호입원약용남용

재산다툼가정불화등으로
보호입원을
약용남용 하는 사례 빈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보호입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신체의 자유 등
환자의 인권 침해

'정신질환 = 치료가 곤란한 중증정신질환'으로 인식

- 완치가 곤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질환으로 인식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차별 요인 존재

- 정신보건법(제3조) 상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 질환의 유형이나 경중도에 따른 합리적 대응이 곤란
- 각종 자격취득·유지 시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차별 (총 25개 법률에 의한 자격 취득 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신보건법

-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위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문제의 예방·조기개입 등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 환경 변화 대응에 한계

정신질환
예방·치료

입퇴원 제도 개선

- 비자의입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도입
- 2주 간 진단입원 도입
-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에 의한 입원 결정
- 자의·동의입원 퇴원의사 확인주기 단축(연 1회-> 2개월마다)

정신질환자
재활·복지
·권리보장

정신질환자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축소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정신건강의 날(10.10) 신설

전 국민 생애주기별 조기발견 개입 지원 근거 마련

1 명칭 변경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기초정신보건사업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기초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재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 용어 설명

정신질환자

- 망상 환각사고나기분의장애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 [별표 제13호 - 수정검토 중]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질환에 대한 기준	증상에 관한 기준	자신의 건강·안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증,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조현병, 분열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의 중독성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인격장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각, 망상, 흥분 및 공격성 -의식장애 및 혼미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고양감, 들뜬 기분, 충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자해 시도 및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의 악화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물질적 피해 위험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등 타인의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방화, 기물파손 타인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감을 주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용어 설명

지체 없이

- ✓ **48시간 이내**: 자의, 동의, 보호입원에서 환자가 퇴원을 요청했을 경우
- ✓ **72시간 이내**: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퇴원명령/전원조치/ 외래치료명령등을 받는 경우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입원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 행정입원이 해제되는 경우

주말, 법정 공휴일 제외

2 용어 설명

입원신고기간

- ✓ 입원한 날로부터 **3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
 - 초일불산입에 의거하여 입원 당일은 3일의 기간에 불포함
(예) 월요일 오후 입원 → 목요일 자정까지 신고

초일불산입(규칙 제62조)

- 법이나 영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설 제도

동의입원

- ✓ **입원대상**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 ✓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 ✓ **퇴원의사 확인** 2개월 마다
- ✓ **퇴원절차** 퇴원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48시간 이내) 퇴원이 원칙
 - 예외적으로 **보호의무자퇴원거부 + 전문의입원필요성소견**
⇒ 72시간 범위에서 퇴원 제한
 -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제5장 보호 및 치료[제 39조~52조]

<참고 :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의 비교>

	자의입원 (제 41조)	동의입원 (제 42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 43조)	행정입원 (제 44조)
유형	자발적		비자발적	
요건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필요한 정신질환 및 (and)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발견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신청
입원신청	본인이 입원신청서 제출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동의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입원절차	별도 절차 없음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 권고 ⇒ 2주간 진단입원 ⇒ 소속이 다른 정신과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치료입원) 확정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 권고 ⇒ 2주간 진단입원 ⇒ 정신과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치료입원) 확정
기간	제한 없음		3개월 간	
입원신고	해당 없음		3일 내 신고	
입원적합성의 심사	해당 없음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이내)	
퇴원의사의 표시	본인의 신청(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필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 해제
퇴원제한	신청하면 지체 없이 최원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 제한 가능	입원요건 충족 시 퇴원거부 가능	해제하면 지체 없이 퇴원
입원연장의 요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2시간 내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 필요)	소속 다른 정신과전문의 2인 소견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3개월(1차) + 6개월연장	2인 이상의 전문의 판단 * 3개월(1차) + 6개월연장

3 신설 제도

※ 2018. 5. 30.부터 시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 **설치** 국립정신병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관
- ✓ **구성** 10~30명
(위원장) 국립정신병원등의 장
(위원)정신과전문의, 법조인전문가당사자등포함
- ✓ **운영** 월 1회이상 안건이없을시, 개최하지않음
- ✓ **기능**
 - 입원신고접수및보완요구
 - 입원신고건의입원심사소위원회회부
 - 환자의요청 또는위원장직권으로 조사원파견조사

입원심사소위원회

- ✓ **설치** 국립정신병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관
- ✓ **구성** 심사위원 중 5~15명
- ✓ **운영** 월 1회이상 안건이없을시, 개최하지않음
- ✓ **기능** 비자의(보호입원 행정입원)입원적합성심사

4 입원 유형

자의입원 (제41조)

- 환자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며,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경우 지체 없이(48시간) 퇴원가능**

동의입원 (제42조)

- 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
-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퇴원이 가능하나 **보호의무자 거부 및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제한 가능**

보호의무자에 의한입원 (제43조)

- 보호의무자(2인 이상)신청과 전문의 권고로 진단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전문의 1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행정입원 (제44조)

-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으로 사군구청장이 입원**

응급입원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크고 급박하며,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3일간 입원가능, 공휴일 제외)**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개정내용

4-1 자의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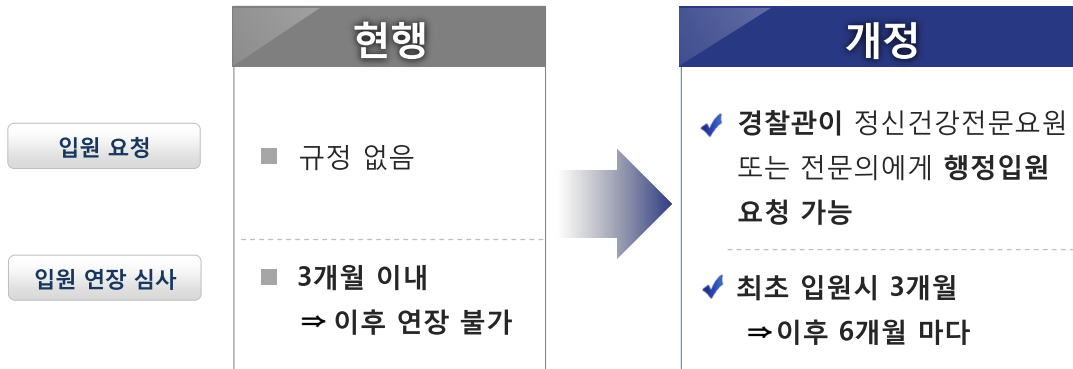
	현행	개정
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 1년에 1회 이상	✓ 2개월 마다
퇴원 절차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48시간 이내) 퇴원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개정내용

4-2 보호입원

	현행	개정
보호의무자 범위	■ 사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 포함	✓ 사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규정 삭제
보호의무자 순위	■ 부양의무자 ⇒ 후견인	✓ 후견인 ⇒ 부양의무자
입원 요건	■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OR 자타해우험	✓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AND 자타해우험
입원 절차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전문의 1인 진단	✓ 보호의무자 2인 신청 (※ 동의권제한) + 전문의 1인의 진단(1차) + 출장진단의 1인의 진단(2차)
입원적합성 심사	■ 없음	✓ 3일 이내 입원사실신고 ⇒ 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내 입원적합여부 판단
입원연장 심사	■ 전문의 1인 진단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6개월마다 심사	✓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일치된 소견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1차 연장 3개월, 1차 연장 이후 매 6개월마다 심사

4-3 행정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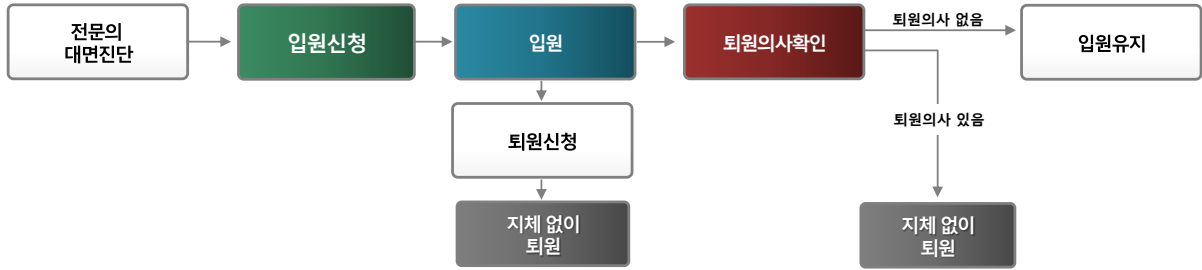


2교시

입원 유형 별 절차

- 자의입원
-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응급입원

제41조 자의입원



입원신청	입원안내	퇴원의사확인	퇴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신청서(별지 제20호)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시행규칙 제33조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및 보호자에게 권고지(별지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원의사확인서(별지 제21호) 입원을 한 날 또는 마지막 확인일부터 2개월마다 확인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시행규칙 제33조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퇴원신청시(지체 없이) 퇴원의사확인절차 과정에서 퇴원요청 시(48시간 이내)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퇴원 사실통지서 작성 (별지 제39호)</p>

제41조 자의입원

1 입원절차

전문이진단 → 입원신청 → 입원

1 전문의 대면진단

입원대상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대면진단

- 입원필요성검토
- 관련 임상적 증상 등은 입원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 기술

※ 법 제68조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시킬 수 없다

2 입원신청서 작성
※ 별지 제20호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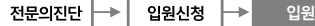
정신의료기관의 장

서식 작성방법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작성
- 지정/동의보호의무자
 - 보호자는 반드시 환자의 보호자일 필요는 없으며, 공란으로 두어도 됨
- 성명 및 서명: 본인의 자필로 작성

제41조 자의입원

1 입원절차



3 권리고지

※ 별지 제1호

입원신청서 작성 전

- 1 권리고지(별지 제1호)의내용을 구두로 고지
- 2 서식을 제공한 후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고지내용

- 입원(입소)유형에 따른 퇴원(퇴소)방식

[참고] 서식

권리고지

본 서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도봉순	생년월일	()년()월()일	연락처	02-1234-5678 010-1234-5678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번지 2층 201호				
입원기관/입소사실	기관/시설명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성명)				
	주소	이동				
	서울시 말잔구 용마산로 127	연락처 02-2204-0114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원/입소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는 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 2017년 6월 1일에 입원/입소되었습니다.
2. 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입소 중
 - [] 자의입원/입소 [] 동의입원/입소 [] 행정입원/입소 [] 응급입원에 해당합니다.
3. 입원/입소유형에 따른 퇴원/퇴소방식
 - (가) 자의입원/입소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퇴소를 요구하면 퇴원/퇴소절차를 거쳐 퇴원/퇴소할 수 있습니다.
 - (나) 동의입원/입소 환자는 퇴원/퇴소를 요구할 경우 퇴원/퇴소가 72시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보호입원/입소 환자 및 행정입원/입소 환자는 퇴원/퇴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라) 응급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4. 퇴원/퇴소가 제한되는 보호입원/입소 및 행정입원/입소 환자는 다음의 각 경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할 대면조사신청(척일에게 구두로 신청 가능)
 - 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퇴소도 촉구개선 심사청구
5. 보호입원/입소 및 행정입원/입소 환자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18.5.30일 이후)
6. 위 각 신청 및 청구 서류는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은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적정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7. 그 밖에 환자 권리보호에 관한 안내는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옆에 비치되어 있는 권리보호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원기관의 치료/요양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2017년 6월 1일

※ 진하게 찍힌 부분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은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적정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 환자의 동의에 따라 권리고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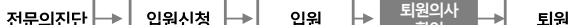
고지 일시 및 서명 불가 사유

권리고지 확인서 환자 성명 도봉순 (서명 또는 인)

서명불가능사유: [] 서명불가능(사유: 충분한 상태로 준것말을 계속 하는 등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임)

제41조 자의입원

2 퇴원절차



4 퇴원의사확인

※ 별지 제21호

퇴원의사확인

- 입원을 한 날 또는 마지막 퇴원의사 확인일부터 2개월마다

조치사항

- 1 퇴원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퇴원을 신청한 경우
 - 지체 없이 퇴원(48시간-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제외)
- 2 퇴원의사가 없고 입원 연장 요청하는 경우 입원 유지

※ 환자의동의를 받아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사실 통지(별지 제39호)
- 단환자의의사능력이미흡할 경우 보호자동의로 갈음

서식 작성방법

- 1 환자
 - 퇴원의사 유무 및 사유는 자필로 작성
- 2 정신의료기관
 - 퇴원의사확인일시 이전 퇴원의사확인일시

[참고] 서식

입원 등 환자 퇴원 등 의사 확인서

본 서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주인등록번호	연락처
	전우원	771234-2345678 ()년()월()일	02-2345-6789 010-2345-6789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번지 1층 101호	입원등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의입원등 [] 동의입원등

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의입원등 환자 또는 동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동의입원등 환자입니다.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한 환자에게는 동법 제41조제3항 또는 동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퇴원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환자 자필로 작성

[] 퇴원의사 있음
[] 퇴원의사 없고 계속 입원하길 원함
[] 기타

퇴원, 계속 입원, 기타 의사의 구체적인 사유 :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이유로 퇴원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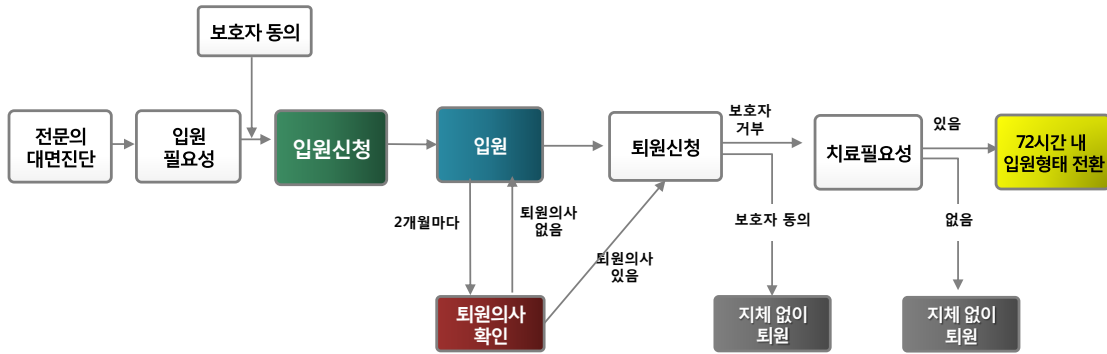
환자: 2017년 7월 24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아래의 부분은 정신의료기관 확인담당자가 작성합니다.

퇴원의사 확인일시	2017년 7월 24일
이전 퇴원의사 확인일시	년 월 일

제42조 동의입원



입원신청	입원안내	퇴원의사확인	퇴원요건	퇴원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동의를 받아 입원신청(별지 제20호) • 환자 본인증명서류 • 보호자 1인 및 증빙서류 <p>※ 증빙서류는 최대 3일 이내 구비 완료</p> <p>※ 시행규칙 제34조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권고지(별지 제1호 및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의사확인서(별지 제21호) • 입원 등을 한 날 또는 마지막 확인일부터 2개월마다 확인 <p>※ 시행규칙 제34조6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자 퇴원요청 및 보호자 동의(48시간 이내) ② 보호자 퇴원 거부하나 치료필요성 없는 경우 (48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신청서(별지 제22호) • 퇴원 사실통지서 (별지 제39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자 퇴원요청 및 보호자 거부 -> 치료필요성 판단 ② 치료필요성이 있을 경우 72시간 내 입원형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권 고지서 작성 및 통지(별지 제23호) <p>※ 시행규칙 제34조3항-6항</p>

제42조 동의입원

1 입원절차

전문이진단 → 보호자동의

1 전문의 대면진단

입원대상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대면진단

- 입원필요성 검토
- 관련 임상적증상 등은입원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 기술

※ 법 제68조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시킬 수 없다

2 보호자 동의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필요(순위는 무관)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법 제974조)
 - 부양의무자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환자 본인 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 현재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증과 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보호의무자와 동일한 주소지인 경우, 보호의무자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보호의무자 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2조 동의입원

1 입원절차



3 권리고지

※ 별지 제1호

입원신청서 작성 전

- 환자
 - 권리고지(별지 제1호)내용을 구두로 고지
 - 서식을 제공한 후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보관
- 보호의무자: 신청서 작성 전 또는 입원 후 72시간 이내 별지 제2호의 내용을 송부(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

고지내용

- 입원(입소)유형에 따른 퇴원(퇴소)방식

[참고 서식]

권리고지

본 권고서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도봉순 생년월일: ()년()월()일 연락처: 02-1234-5678 / 010-1234-5679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번지 2층 201호
입원기관/입소사실	기관/시설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성명) 이철 주소: 서울시 말전구 용마산로 127 연락처: 02-2204-0114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원/입소경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는 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 2017년 6월 1일에 입원/입소되었습니다.
- 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 중 [] 자의입원/입소 [동의입원/입소 [] 보호입원/입소 [] 행정입원/입소 [] 응급입원에 해당합니다.
- 입원/입소유형에 따른 퇴원/퇴소방식
 - 자의입원/입소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퇴소를 요구하면 퇴원/퇴소명지를 거쳐 퇴원/퇴소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입원/입소 환자는 퇴원/퇴소를 요구할 경우 퇴원/퇴소가 72시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입원/입소 환자 및 행정입원/입소 환자는 퇴원/퇴소가 제한될 수 없습니다.
 - 응급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 퇴원/퇴소가 제한되는 보호입원/입소 및 행정입원/입소 환자는 다음의 각 경우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할 대면조사신청(적형에게 구두로 신청가능)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등/퇴소도 처우개선 심사청구
- 보호입원/입소 및 행정입원/입소 환자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18.5.30일 이후)
- 위 각 신청 및 청구 서류는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은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작성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 그 밖에 환자 권리보호에 관한 안내는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옆에 비치되어 있는 권리보호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기관의 치료/요양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2017년 6월 1일

본 권고서 유효기간: 본 권고서가 도출 작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입원/입소된 후 72시간 이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은 본 권고서를 환자에게 필기 도구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환자는 환자에게 이를 권고서로 작성하게 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서 보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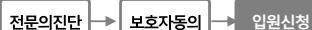
권리고지 확인서

본 환자는 다음에 기재된 []에 표시한 [동의입원/입소]에 동의하며, 본 권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지받았으며, 2017년 6월 1일 []년 []월 []일 []시 []분 []초에 [] (서명 또는 인)

서명/인정사유: [서명/인정 (사유: 충분한 상태로 존중받을 계속 하는 등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임)

제42조 동의입원

1 입원절차



4 입원신청서 작성

※ 별지 제20호

서식 작성 방법



- 신청인(환자)의 인적사항 작성
- 지정/동의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작성
- 성명 및 서명: 자필로 작성

서류 미 구비 시

- 입원신청서 하단 - 미구비사유작성 및 미구비서류표기
- 3일 이내 서류 구비 필요

[참고 서식]

([]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

본 신청서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환자)	성명: 전우희 주민등록번호: 771234-2345678 ()년()월()일 연락처: 02-2345-6789 / 010-2345-6789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번지 1층 101호
지정/동의 보호 의무자	성명: 전우희 주민등록번호: 531234-1234567 ()년()월()일 연락처: 02-2345-6789 / 010-3456-7890 이메일: ad@hanmail.net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번지 1층 101호

신청인(환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자의, [동의) 입원 또는 입소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신청인: **전우희**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입원/입소신청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의 동의: **전우희** (서명 또는 인)
*동의일종의 경우에만 기재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자의입원등 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하여 퇴원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입원등 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 및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신청 시부터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퇴원을 거부하는 동안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주민등록증의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보호의무자의 주소와 동일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보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 각 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친족관계등록부, 친족관계등록부, 친족관계등록부, 친족관계등록부

3. 기타 퇴원/퇴소신청을 위한 서류

본 신청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구비하지 못한 사유 작성**

※ 아래의 부분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서 확인필요사항입니다.

동의입원: [구비함
서류 구비여부: [] 구비하지 못함 [] 보호의무자 증명서류 미비, [] 환자 주민등록표등본 미비
* 미비 서류 수령일자: 년 월 일

제42조 동의입원

2 퇴원절차



5 퇴원의사확인

※ 별지 제21호

퇴원의사확인 주기

- 입원을 한 날 또는 마지막 퇴원의사 확인일 부터 2개월마다

조치사항

- 1 퇴원의사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 48시간(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제외) 이내 퇴원
- 2 퇴원의사가 없고 입원 연장 요청하는 경우 입원 유지

※ 환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사실 통지(별지 제39호)
- 단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할 경우 보호자동의로 갈음

서식 작성 방법

- 1 환자
 - 퇴원의사 유무 및 사유는 자필로 작성
- 2 정신의료기관
 - 퇴원의사 확인 일시, 이전 퇴원의사 확인 일시

[참고] 서식

입원 등 환자 퇴원 등 의사 확인서

보건복지부 ()에 ()로 표시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성명	전우원	주민등록번호	771234-2345678 (남. <input checked="" type="radio"/>)	연락처	02-2345-6789 010-2345-6789
환자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번지 1층 101호	입원처	<input type="checkbox"/> 자의입원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입원처

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의입원처 환자 또는 동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동의입원처 환자입니다. 자의입원처 또는 동의입원처를 한 환자에게는 동법 제41조제3항 또는 동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원한 날부터 2개월 이내 퇴원의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원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환자 자필로 작성

퇴원의사 있음
 퇴원의사 없고 계속 입원하길 원함
 기타

퇴원, 계속 입원, 기타 의사의 구체적인 사유 :

2017년 7월 24일

환자: 전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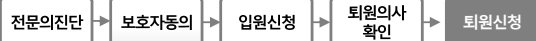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아래의 부분은 정신의료기관 확인담당자가 작성합니다.

퇴원의사 확인일시	2017년 7월 24일
이전 퇴원의사 확인일시	년 월 일

제42조 동의입원

2 퇴원절차



6 퇴원신청서 작성

※ 별지 제22호

서류 작성 방법

- 환자가 작성
 - ※ 작성을 거부 또는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에서 유기재 후보관
- 1 신청인(환자) 및 보호의무자 인적 사항 작성
- 2 퇴원신청의 사유 : 환자가 직접 작성
- 3 퇴원신청의 미작성 사유
- 4 성명 및 서명, 작성일시 : 자필로 작성

조치사항

- 1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 48시간(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제외) 이내 퇴원
- 2 보호의무자는 거부하나 전문의 진단 결과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 환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사실 통지(별지 제39호)
- 단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할 경우 보호자동의로 갈음

[참고] 서식

() 동의 (보호) 입원 등 환자 퇴원 등 신청서

보건복지부 ()에 ()로 표시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신청인 (환자)	성명	전우원	주민등록번호	801234-2345678 (남. <input checked="" type="radio"/>)	연락처	02-123-4567 010-9888-9999
보호의무자	성명	전정애	주민등록번호	931234-1234567 (여. <input checked="" type="radio"/>)	연락처	02-123-4567 010-7777-6666
신청인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우리아파트 101동 102호	입원처	환자와의 관계	부	

신청인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또는 동법 제4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9항에 따라 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등을 하기 위하여 퇴원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퇴원신청의 사유 :
받아 다 나왔다고 생각해서 퇴원을 신청합니다.

※ 퇴원등 신청서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등을 시키거나,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환자가 여러 번 퇴원등 신청사를 밝혀도 퇴원등 신청서는 1회만 작성합니다.

2017년 6월 20일 14시(환자가 작성)

신청인: 전우원 (인)

보호의무자는 위 퇴원신청에 동의합니다. 전정애 (인)

보호의무자: 전정애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아래의 부분은 정신의료기관 확인담당자가 작성합니다.

실제퇴원일시 (퇴원한 경우)	2017년 6월 22일
퇴원신청서 미작성사유	<input type="checkbox"/> 작성거부(사유:)
미작성사유	<input type="checkbox"/> 작성불능(사유:)

제42조 동의입원

3 퇴원거부



7 퇴원거부사유 고지 및 통지 ※ 별지 제23호

퇴원거부 상황

-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 정신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 → 환자 및 보호의무자

- ① 환자 및 보호의무자 인적 사항 작성
- ② 입원기관 : 현재 환자가 입원한 병원 작성
- 담당자는 주치의 성명 기입
- ③ 1. 고지를 들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 체코
-2. 퇴원등이 제한된 구체적인 사유 기입
- ④ 환자서명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단, 환자의 거부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기입

- ※ 환자에게 고지 및 서식 제공, 보호의무자에게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송부
- ※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서명을 받아보관

서식작성방법

[참고] 서식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청구권 ([V] 고지서 [] 통지서)

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름	시/도/구/동	1234567 (남/여)	02-1234-5678 010-1234-5678
보호의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름	시/도/구/동	1234567 (남/여)	02-1234-5678 010-2222-3333
입원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시 팔진구 을마산로 127	02-3204-0114	김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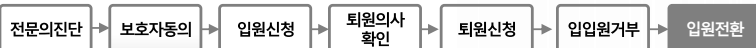
1. (환자 [V] 보호의무자 [])는 [V]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하여 퇴원등이 제한되는 동의입원등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입원을 하여 퇴원등이 제한되는 보호입원등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2. 퇴원등이 제한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속에 특이 들어있다는 방상으로 직사각형 행동이 자취되고 있으며, 주위 원자들에게 대한 공격성의 발현으로 자타에 위험이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3. 환자가 동의입원등 환자인 경우에는 퇴원등 제한 기간 동안 보호입원등이나 행정입원등 환자로 전환될 수 있고, 보호입원등 환자인 경우에는 향후 일정기간 퇴원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퇴원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조사원 대면조사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입원등 환자이 입원적 합성심사를 받은 경우라면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성심사신청서와 조사원 대면조사신청서 '18.5.30.부터 가능합니다.
5. 퇴원등 심사 청구서류는 정신의료기관등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옆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작성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6. 보호의무자도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월 일
환자서명 : 서명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서명
※ 서명, 직책, 사유 기입 한 후 추가 예정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귀하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서식을 한 부 환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 부에는 환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환자, 이의 및 조사원 등 하나 이상의 당사자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42조 동의입원

4 입원형태 전환



8 입원전환 시 구비서류

72시간 종료 전까지 보호입원 신청서 접수 또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 제출하면 가능

보호입원으로 전환

- 보호입원신청서 작성(별지 제24호)
- 입원권고서(별지 제25호)
- ※ 보호의무자1인에서2인 신청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서류 구비 필요

고지사항

- ①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입원형태 전환 사실 고지
- ② 권리고지(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구두로 고지
서식을 제공한 후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보관

행정입원으로 전환

- ①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별지 제33호) 및 사군구청장에 신청
- ② 72시간내 전문의진단(별지 제35호) 및 사군구청장에 결과송부
- ③ 지정정신의료기관 이송 (최대 2주까지 입원 가능)
- ④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별지 제35호) 최대 3개월까지 입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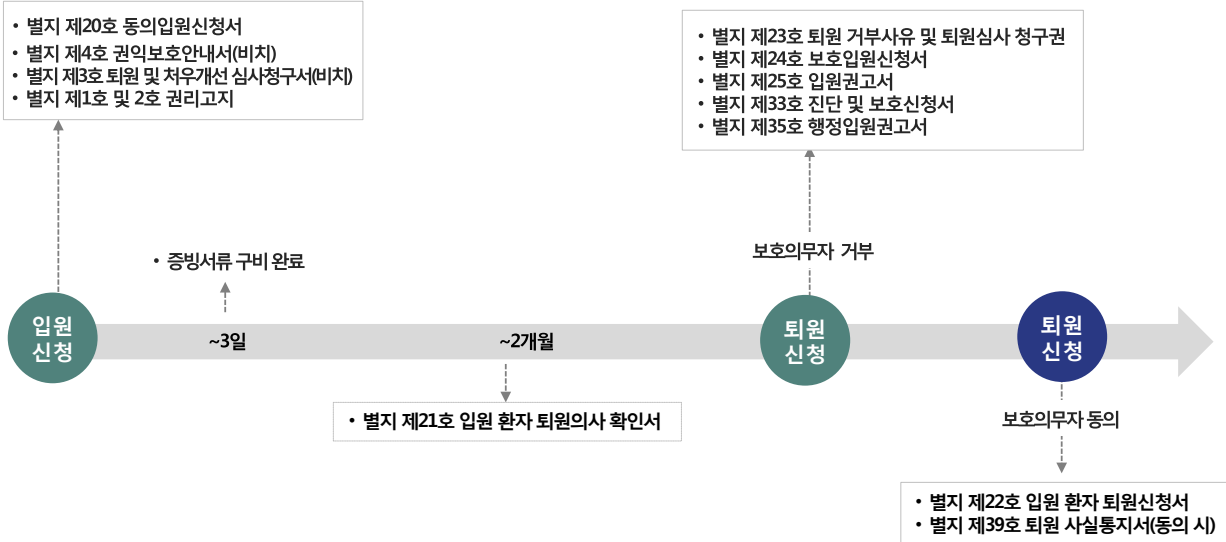
※ 단 현재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지정정신의료기관인 경우 이송은 불필요

※ 고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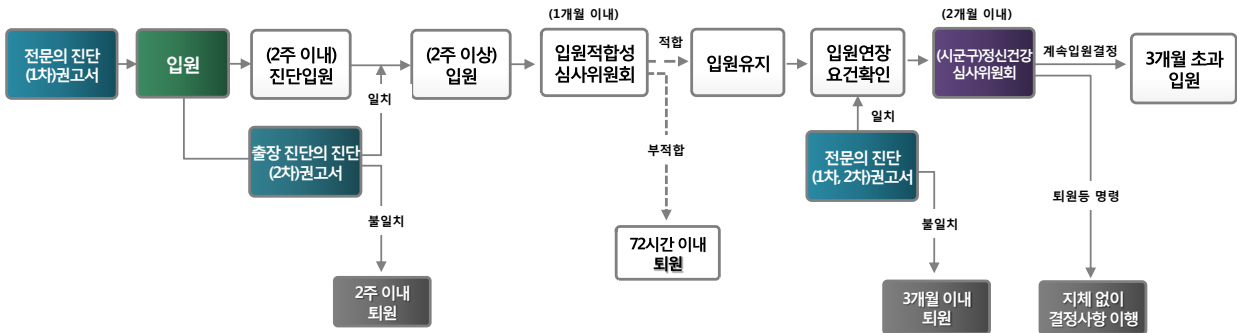
- 입원(입소)유형에 따른 퇴원(퇴소)방식
- 보호 및 행정 입원(입소)환자의 권리
-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18.5.30 이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청구

제42조 동의입원

5 행정관련 구비서류



제43조 보호입원



* 입원 기간은 최초 입원 시 3개월, 1차 입원 기간 연장을 한 경우 3개월, 1차 입원 기간 연장 이후는 6개월임.

입원요건	2인 의사 진단	입원적합성심사	계속입원 심사	퇴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AND자해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입원신청서(별지 제24호) 보호자 2인 증빙서류 입원 즉시 인신보호청구 등 권고고지(별지 제1호) <p>※ 시행규칙 제35조1항~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장 진단의 입원권고서 작성(별지 제25호) 1차 및 2차 진단 소견통보(별지 제28호) <p>※ 시행규칙 제35조6항~7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 당시의 증상 및 입원 절차, 향후 치료입원(3개월) 필요성을 심사 입원일 기준 최대 3일 이내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 1개월 이내 심사(별지 제40호, 별지 제25호) <p>※ 시행규칙 제40조, 4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월 초과 입원 또는 퇴원, 재심사 등을 심사 입원만료일 1개월 전 시군구 청장에 청구(별지 제29호, 제25호, 제28호, 제26호, 제30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필요 <p>※ 시행규칙 제35조8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견불일치(2주이내) 입원부적합통지(72시간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명령통지(72시간이내) 이외 보호자 퇴원신청 시 (48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원신청서(별지 제22호) 퇴원 등 사실통지서(별지 제39호)

제43조 보호입원

1 입원절차

전문이진단
(1차)권고서

1 입원권고서 작성

※ 별지 제25호

입원요건

-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고 (제43조제3항제1호)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별표13 (제43조제3항제2호))

서신작성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병원장

- ① 환자 인적 사항 작성
- ② 입원유형 및 진단명 작성
- ③ 증상: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 증상에 체크
- ④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별표13)
- ⑤ 최종조건: 입원 필요 또는 퇴원 필요
- ⑥ 면허번호, 소속기관명, 성명 서명 작성

참고 입원권고서는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출력하여 서명 후 보관

[참고] 서식

([X]입원등, [X]입원등 기간 연장) 권고서

(X) 권고서: [X]에 서신서 작성하고, 글씨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X) 구체적인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 첨부하십시오.

성명	주민등록번호	[X]급여 1종 [X]보통 [X]급여 2종 [X]기타
성별	(남/여)	연락처
주소	02-1234-567 010-8888-9999	
환자	내담이(주주 포함) 치매양상을 보임. 급박적인 폭력성 급회 입원등/입원등 기간 연장(예정) 일자 2017년 9월 10일	
입원유형	[X] 보호입원등 [X] 행정입원등 [X] 응급입원	
진단명(ICD-10)	조현병	
증상 (복수체크 가능)	[X] 환각 [X] 망상 [X] 흥분, 충동성 [X]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X] 조울상태 [X] 의식장애, 혼미 [X] 수면장애 [X] 기타()	
서신 수정 예정	A. 안전-건강 위험여부([X] 있음 [X] 없음 [X] 파악하기 어려움) B. 타해 위험여부([X] 있음 [X] 없음 [X]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환자를 비난하는 발언이 심각하여, 언제라도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위험이 있음. C. 가족과 연관된 피해양상으로 인해 급박적인 폭력과 폭력이 있으며, 내원 당일에도 난폭한 행동을 보여 본원에 상급함.	
최종조건	[X] 입원등/입원등 기간 연장 필요 [X] 퇴원등 필요	
의사 면허번호	236452	소속기관명
전문이진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이	김민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55조에 따라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관련 소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 국립정신병원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7인

제43조 보호입원

1 입원절차

전문이진단
(1차)권고서

[별표1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1호 질병에 관한 기준

- 조증,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 조현병, 분열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
-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의 중독성 장애
- 기질성 정신장애, 인격장애 등

2호 증상에 관한 기준

- 환각, 망상, 흥분 및 공격성
- 의식장애 및 혼미
-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 고양감, 들뜬 기분, 충동성

3호 자신의 건강 안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성 기준

- 자살/자해 시도, 및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 증상의 악화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물질적 피해위험
-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등 타인의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 방화, 기물파손, 타인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감을 주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참고 판단의 방법

- 제 1호, 제 2호, 제 3호의 각 기준과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
- 기왕력, 현 병력과 이와 관련된 행위 및 증상을 고려하여 판단

[참고] 판단기준-보건복지부 입퇴원매뉴얼에서 발췌

※ 치료 또는 요양의 필요성

평가점수	치료 또는 요양의 필요성
1. 정상	없음
2. 정상과 병의 경계	낮음
3. 경도의 병	
4. 중등도의 병	보통
5. 심각한 병	높음
6. 매우 심각한 병	아주 높음
7. 극히 심각한 병	

※ 타해(폭력)위험이 판단-2점 이상일 경우 폭력가능성 높음

1. 혼란스러운 (형질수설 또는 지남력 상실 상태)	① 없음 ① 있음
2. 예민함 (쉽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인 상태)	① 없음 ① 있음
3. 시끄러움 (소리가 크게 나가거나 소란스러운을 유발)	① 없음 ① 있음
4. 신체 위협 (공격적인 자세)	① 없음 ① 있음
5. 언어 위협 (협박 또는 위협하는 말)	① 없음 ① 있음
6. 물건 공격 (물건에 대한 폭력 행위)	① 없음 ① 있음

제43조 보호입원

1 입원절차

전문의진단 (1차) 권고서 → 입원신청

2 권리고지 ※ 별지 제1호

입원신청서 작성 전

- 환자 ① 권리고지(별지 제1호)내용을 구두로 고지
② 서식을 제공한 후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원 후 48시간 이내
- 보호의무자: 신청서 작성 전 또는 입원 후 72시간 이내
별지 제2호의 내용을 송부(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

※ 특별한 사정의 예
- 정신질환자의 증상으로 인한 공격성의 발현, 의사소통의 어려움
- 입원에 대한 강력한 거부사 등으로 서식 전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 48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으며, 계속 거부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전달이 어려운 경우 서식에 사유 작성

고지내용

- 입원(입소)유형에 따른 퇴원(퇴소)방식
- 보호 및 행정 입원(입소)환자의 권리
 -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185.300이후 시행)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 처우개선 심사청구

[참고] 서식

권리고지

성명	도봉군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02-1234-5678 010-1234-5678
환자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번지 2층 201호				
입원기관/입소시설	기관/시설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소: 서울시 말린구 용마산로 127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성명)	이철 연락처: 02-2204-0114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원/입소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는 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 2017년 6월 1일에 입원/입소되었습니다.
2. 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 중 [] 자의입원/입소 [] 동의입원/입소 [] 보호입원/입소 [] 행정입원/입소 [] 응급입원에 해당합니다.
3. 입원/입소유형에 따른 퇴원/퇴소방식
 - 가. 자의입원/입소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퇴소를 요구하면 퇴원/퇴소절차를 거쳐 퇴원/퇴소할 수 있습니다.
 - 나. 동의입원/입소 환자는 퇴원/퇴소를 요구할 경우 퇴원/퇴소가 72시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보호입원/입소 환자 및 행정입원/입소 환자는 퇴원/퇴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라. 응급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4. 퇴원/퇴소가 제한되는 보호입원/입소 및 행정입원/입소 환자는 다음의 각 경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신청(적합하게 구두로 신청 가능)
 - 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퇴소도 처우개선 심사청구
5. 보호입원/입소 및 행정입원/입소 환자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18.5.30일 이후)
6. 위 각 신청 및 청구 서류는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은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적정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7. 그 밖에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안내는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일에 비치되어 있는 권익보호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원기관의 치료/요양 및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2017년 6월 1일

※ 진정할 특별한 사정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담당자가 기밀을 지킬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은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적정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그 밖에 환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원/입소환자를 작성하게 하는 입원/입소환자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고지 확인서

국립정신건강센터(주)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하신 환자와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는 본 센터에서 제공한 권리고지 고지일시: 2017년 6월 1일 환자 성명: 도봉군 (서명 또는 인)

서명/인명: 서명/인명(사유: 충분한 상태로 준것말을 계속 하는 등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임)

제43조 보호입원

1 입원절차

전문의진단 (1차) 권고서 → 입원신청

3 입원신청서 작성 ※ 별지 제24호

보호의무자 → 정신의료기관의 장

서식작성방법

- ① 환자인적사항작성
- ② 보호의무자 2인의 인적사항작성
- 보호자가 1명만 있는 경우 1명의 신청으로 같음
- ③ 보호의무자 중 후견인 유무에 체크
- ④ 보호의무자 2인의 성명 및 서명 작성
- 입원 당일 보호의무자 1인이 내원하지 못한 경우 7일 이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신청서 제출
- ⑤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유 입력

※ 구비서류 항목
- 보호의무자 증명서류, 환자 주민등록표 등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권고서, 입원신청서 작성지연사유서, (의료, 생계) 수급자증명서(의료기관 내에서 확인 가능하면 제출하지 않음)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미비서류를 수령한 일시를 반드시 작성

[참고] 서식(앞면)

보호입원등 신청서 (복합)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우희	771234-234567 (남/여)	02-2345-6789 010-2345-6789
보호의무자(I)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우희	531234-1234567 (남/여)	02-2345-6789 010-3456-7890 ad@fermail.net
보호의무자(II)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김희성	(남/여)	02-2345-6789 010-3456-7890 ad@fermail.net

1. 보호의무자 중 후견인 () 있음 [] 없음

2. 본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 정신의료기관에 위 환자의 보호입원등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보호의무자들은 뒤쪽의 보호의무자 신청확인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기 후견인 존재 여부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호의무자(I): 성우희 2017년 6월 2일
보호의무자(II): 김희성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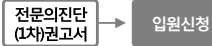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주민등록증의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에 다른 경우에 한함), 다만, 보호의무자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주민등록표등본
 -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다.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단,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수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 없음)
4. 보호의무자 2명의 동거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보호입원 신청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 작성지연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보호입원 신청서 작성지연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보호입원 신청서 작성지연사유서)를 포함한다.)
5.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권고서(다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포함함)

※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작성

제43조 보호입원

1 입원절차



[참고] 보호의무자

※ 문제 해결 시 자격 회복

보호의무자 요건

- 2명 이상의 동의 필요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제974조)
 - 부양의무자: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 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보호의무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순위자 2명의 동의 필요
 - 순위: 후견인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간 의견이 다를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름(민법 제976조)
- 보호자가 1명만 있는 경우 1명의 신청으로 같음

보호의무자 결격사유(법 제39조)

- 파성년후견인 및 파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보건복지부령 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 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중인 사람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신청 등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전문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 필요)
 - 부양의무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부양의무를 장기 간 동안 사실상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정신질환자 또는 다른 부양의무자가 소명하고 소문구장이 확인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무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3조 보호입원

1 입원절차



[참고]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환자 본인 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현재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증과 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보호의무자와 동일한 주소지인 경우, 보호의무자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보호의무자 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 미 구비 시



보호자방문 + 증빙서류 미비

- ① 보호입원신청서에 사유작성
- ② 3일 이내 제출



미방문 + 보호입원 동의

- ① 입원신청서 작성지연서류서 작성 (별지 제7호)
- ② 최대 7일 이내 제출

※ 내원(미 방문)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 생업중사, 먼 이동거리, 군복무, 해외여행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최대 7일 이내(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퇴원(보호자 미방문의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름.

제43조 보호입원

1 입원절차

전문의진단 (1차)권고서 → 입원신청

4 입원 통지 ※ 별지 제31호

통지사항

-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사실 및 사유 통지(별지 제31호)
- 서면(전자문서 포함)
-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환자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청구가 가능함을 고지(별지 제1호)

서식작성방법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환자 및 보호의무자

- 환자 인적사항 작성
- 환자 입원 일자 작성
- 환자 입원유형에 체크
- 입원사유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타인에 대한 위험

[참고] 서식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

본 통지서는 []에 표시된 사항을 한시기 작성합니다.

성명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201212-2295178	연락처 02-1234567 010-9898-9999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동 우리아파트 101동 102호	입원등 연장 기간 2017년 6월 30일	입원등 기간 2017년 9월 30일까지

환자 입원등 일자
2017년 6월 30일

환자 입원유형 보호입원등 행정입원등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 사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타인에 대한 위험

- 환자는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진단을 위한 보호입원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6개월(최초입원의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입원등(보호입원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6개월(최초입원의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입원등(행정입원등) 되었습니다.
- 보호입원등을 한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퇴원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게 입원등 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등을 한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와 요양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 9월 10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환자·보호의무자(보호자) 귀하

제43조 보호입원

2 입원신고

전문의진단 (1차)권고서 → 입원신청 → 입원신고

1 입원신고 사항

입원신고 기간

- 입원한 날부터 3일(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 이내
- 시행규칙 제62조 의거 입원 당일은 3일의 기간에 불포함
(예) 월요일 오후 입원 -> 목요일자정까지 신고

※ 시행규칙 제62조 초일불산입

-영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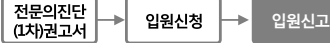
신고절차

- 입퇴원관리시스템 (www.amis.go.kr)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입원신고 입력
※ 신고주체는 병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호입원 신고서(별지 제40호) 입력
- 입원권고서(별지 제25호) 입력
-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확인(185300이후)

※ 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개최 전 환자가 사망 또는 퇴원하거나 자의 또는 동의입원으로 전환된 경우 종결처리 됨

제43조 보호입원

2 입원신고



2 입원신고서 작성

※ 별지 제40호

서식작성

정신의료기관의 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18.5.30 이전 각 권역별 국립병원장)**

- ① 신고기관 : 현재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 각 항목에 해당되는 기관내 담당자를 기입
- ② 환자
- 최초발병시기/발병일 입원 일자; 최근 퇴원 일자
- 최근 퇴원 기관/시설 명칭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작성
- ③ 입원 등 유형: 보호 또는 행정 입원/입소 중 체크
- ④ 입원/입소기관 유형에 체크
- 정신과의원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요양시설
- ⑤ 증빙서류 구비 여부
- ⑥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유무에 체크(18.5.30 이후)

[참고] 서식(앞면)

([X] 보호 [] 행정) 입원 등 신고서

신고기관	연락처 02-2345-0114	신고일	2017년 6월 30일
행정담당자	이기권	담당(자문)의사	김기영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동 129지 1층 101호	직업	의사
성명	주인등록번호 박기원 771234-234567 (남, 20)	[] 급여 1종 [X]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동 129지 1층 101호	연락처	02-2345-6789 010-3456-7890
진단명 (ICD-10) 포함	최근 발병일	입원 등 일자	
주소	2015년 1월 10일	2017년 6월 29일	2017년 6월 29일
최근 퇴원 일자	최근 퇴원 기관/시설명	입원 등 일자	
2017년 5월 13일	국립정신건강의학과	2017년 6월 29일	
내원 이유(주호소)	내원 목적	입원 등 횟수(최근 1년 이내)	4회
급회 입원 등/입원 등 기간 연장(예정) 일자	입원 등 횟수(최근 1년 이내)	입원 등 횟수(최근 1년 이내)	4회
2017년 5월 29일	2017년 5월 29일	입원 등 횟수(최근 1년 이내)	4회
입원 등 횟수(최근 1년 이내)	입원 등 횟수(최근 1년 이내)	입원 등 횟수(최근 1년 이내)	4회
입원 등 유형	[X] 보호입원 [] 보호입소 [] 행정입원 [] 행정입소 [] 응급입원		
입원·입소기관	[] 정신과 의원 [X]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구비		
증빙서류 구비 여부	[] 구비 불가 (사유:) [] 구비 불가 (사유:)		
조사원 대면조사	[X] 원할 (사유:) [] 원하지 않음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고서 최종소견	[X] 입원 등/입원 등 기간 연장 필요 [] 퇴원을 필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제 따라 입원을 한 환자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과

신고기관 1. 입원 등 신청서 사본 2부(보호의무자가 1명일 경우 1부)
구비여부 2.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 입원허가결정서 등 사본 각 1부
확인서류 3. 입원 등 권고서(소견서 등) 사본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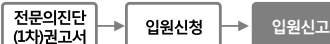
처리 절차

신고서 접수 → 접수 → 진단 → 심사도록 작성 → 심사 → 결정

정신의료기관: 정신과/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0-11

제43조 보호입원

2 입원신고



2 입원신고서 작성

※ 별지 제40호

서식작성

- ⑦ 증상: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 증상에 체크
- ⑧ 위험성의 정도: 별표 13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판단
- ⑨ 치료요양필요성: 증상 및 위험성의 정도를 통합하여 평정
- ⑩ 환자 이상행태: 경찰 구급대원 가족, 응급환자이송단, 자발적내원기타등
- ⑪ 응급입원 진행 또는 동의입원에서 전환여부 해당사항 체크
- ⑫ 입원예상기간: 예상기간을 체크하고 그에 대한 근거사유를 기술
- ⑬ 신체적 장애나 질환
- ⑭ 보호의무자 및 후견인 관련 사항을 체크

[참고] 서식(뒷면)

증상 (복수체크 가능)	[X] 환각, 망상 [] 흥분, 준비 [X] 의식장애 [] 우울 [] 조동성태 [] 인격의 병적 상태 [] 행동조절장애 [] 기타 ()
자녀의 안전 관리가능여부	[X] 있음 [] 없음 [] 파악하기 어려움
타해 위험여부	[X] 있음 [] 없음 [] 파악하기 어려움
환자 병원·시설이송 방법	[X] 경찰관 [] 구급대원 [] 가족 [] 응급환자이송단 [] 환자의 자발적 내원 [] 동의입원 등 중 전환 (전환일자: 년 월 일) [] 응급입원 중 전환 (전환일자: 년 월 일) [] 기타 ()
응급입원 진행여부	[X] 응급입원 진행함 [] 응급입원 진행 안 함
동의입원 등 전환여부	[] 동의입원 등에서 전환함 (전환입원 일자: 년 월 일) [X] 동의입원 등에서 전환 안 함
신체적 장애나 질환	[] 있음(내용:) [X] 없음
알코올 및 약물중독	[X] 중독 없음 [] 알코올 중독 [] 기타 약물 중독 [] 미상
보호의무자 I	성명: 정년할림 연락처: 531234-123456 (남, 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0-11 101동 102호 연락처: 02-1234567 010-7777-8888 환자와의 관계:
보호의무자 II (보호입원의 경우만 기재)	성명: 정년할림 연락처: 531234-123456 (남, 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0-11 101동 102호 연락처: 02-1234567 010-2345678 환자와의 관계:
후견인 (보호의무자가 후견인인 경우만 기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가정법원 사전허가 여부: [] 있음 [] 없음 후견관할 가정법원 명칭:) 후견관련 사건번호:)
환자 지정 보호의무자 (필요시 입력)	성명:) 주소:) 연락처도 유무:) 환자가 직접 연락함 [] 연락했으나 연락 안 됨 [] 지정 보호자가 거절 의뢰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입원 의뢰기관 (필요시 입력)	주소:)

참고 입원신고서 양식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구현되므로 입력필요

제43조 보호입원

3 출장 진단의 진단



1 출장 진단의 역할 및 신청

출장 진단의 역할

-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환자
- ① 출장 진단의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출장진단의료기관 전문의 1인
- ② 입원 2주 이내 입원권고서 작성

출장 진단의 신청 절차

- ① 입퇴원관리시스템 (www.amis.gok.kr) 로그인
- ② 신청: 출장진단의료기관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
 - ②-1. 2주 이내 진단 불가를 통보 받은 경우 2주간간 연장
 - ②-2. 추가기간 이내 진행이 불가하다는 통보 받은 경우 동일병원 소속 전문의 진단

※ 변경 시 입퇴원관리시스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입력

2 입원권고서 작성

※ 별지 제25호

입원요건

-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고 (제43조제3항제1호)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별표13 (제43조제3항제2호))

서식 작성 방법

- ① 환자 인적 사항 작성
- ② 입원유형 및 기존 진단명 작성
- ③ 증상: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 증상에 체크
- ④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별표13)
- ⑤ 최종소견: 입원등/입원등기간 연장 필요 또는 퇴원등 필요
- ⑥ 면허번호, 소속기관명, 성명서명 작성

참고: 입원권고서는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출력하여 서명 후 보관

제43조 보호입원

3 출장 진단의 진단



3 결과통지

※ 별지 제28호

진단통지

- 통지주체: 국립정신건강센터장/국립정신병원장 (1차 및 2차 입원권고서의 최종소견을 토대로 결정)
- 통지방법: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별지 제28호)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통지내용: 입원일로부터 최장 3개월까지의 입원가능 여부

조치사항

- ① 소견이 일치된 경우 2주 이상 입원치료 가능
- ② 소견이 불일치한 경우 2주 이내 퇴원
- ③ 2주 이내 입원권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퇴원

※ 2주 이내 진단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그 사유를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는 예외

[참고] 서식(뒷면)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보호대상인 []에 []를 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환자 성명: 김광희	20128-2345678 (보. 04)	02-1234567 010-9890-111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동 101동 102호		
환자 입원등 일자	2017년 6월 12일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문구 변경 예정 </div>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하여 [√]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등이 가능 []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등이 필요 []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소견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즉시 퇴원등이 필요 (참고: 별첨)		
2017년 6월 12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병원장 </div>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제43조 보호입원



1 입원 연장 신청

요건

-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 ※ 진단 예외 상황인 경우 동일병원 전문의 2인의 소견도 가능
- 연장심사 청구 전 필수절차
 - 진단입원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출장 진단의 신청
 - 국립정신건강센터장/국립정신병원장이 통지한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별지 제28호) 확인
 - 소견 일치된 경우 연장심사 청구
- ※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퇴원 필요
 -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 이후 입원 기간 연장: 입원연장일 기준 6개월 이내

입원 연장 신청 시기

- 입원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청구
- ※ 입원 기간 연장 청구 철회
 -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퇴원한 경우
 - 자의 또는 동의입원으로 전환한 경우

청구서류

- 입원연장 심사 청구서(별지 제29호)
 - 첨부서류 목록
 - ①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별지 제28호) 및 1차 입원기간 연장 권고서(별지 제25호)
 - ②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입원기간 연장 동의서(별지 제30호)
 - ③ 환자 본인의 의견진술서(별지 제26호)

제43조 보호입원



2 입원 연장 심사청구서 작성 ※ 별지 제29호

서식 작성 방법

정신의료기관의 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① 환자인적 사항작성
- ② 연장심사대상의 입원유형 체크
- ③ 진단 최초발병시기작성
- ④ 금회 입원일자 입원만료예정일 연장심사청구서 제출일작성
- ⑤ 심사청구횟수작성
- ⑥ 입원횟수: 다른 기관 입원한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정보파악이 힘든 경우 대략적으로 기술

참고 입원 연장심사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참고] 서식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1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보편	입원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보호의무자 연장심사청구
주소	서약서	[]급여 2종 []가타	유형	[]원정입원등 연장심사청구
진단(NCD-1)	진단(NCD-1)	연락처	02-123-4567	010-9898-9999
금회 입원등 일자	입원등 만료예정일	직업	직업	직업
2017년 6월 29일	2017년 9월 29일	2017년 9월 25일	2017년 9월 25일	2017년 9월 25일
최초 발병 시기	심사청구 총 횟수	입원등 횟수(다른 기관 포함) 횟수	2회	2회
2015년 5월 18일	2회	※ 정보파악이 힘든 경우 대략적으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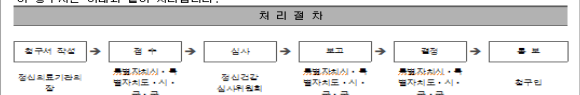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제 5항,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5조제 7항과 동법 제 62조제 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 55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등 연장 심사를 청구합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청구인 제출서류
1.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 2부(보호입원등에 한함)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 입원등 연장 소견서 1부
 3. 치료를 위한 퇴원등 통지서 1부
 3. 입원등 연장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1부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43조 보호입원



첨부서류 ※ 별지 제25호

(입원등 [X]입원등 기간 연장) 권고서

보호대상은 []에 표시를 하고, 근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전화 (호출), 장학생, 장학기금부 포함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성명 김영애	주민등록번호 (별. 01)	[]급여 1종 [X]보협 []급여 2종 []기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동 죽리아파트 101동 102호	연락처 02-1234567 010-8888-9999	

환자
내칭이(주 호소)
귀해양생 외 화평, 광학적인 특이성

최종 입원등/입원등 기간 연장(예정) 일자
2017년 9월 10일

입원등 징수(이른 기간 도착한 경우 포함) 금액
* 정보화원이 없을 경우 대학원으로 기입

입원유형 [X] 보호입원등 [] 행정입원등 [] 응급입원

(기초)진단명(ICD-10) 조현병

증상
[X] 환각 [X] 망상 [] 흥분, 충동성
[]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 조증상태 [] 의식장애, 혼미
[X] 행동조절장애 [] 기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 자신의 안전-건강 위험여부() 있음 [] 없음 []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환자를 비난하는 편향이 심하여, 언제라도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위험이 있음.
 > 타해 위험여부() 있음 [] 없음 []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가족과 연결된 시해양상으로 인해 강력한 추적의 필요성이 있으며, 내원 강압에도 난폭한 행동을 보여 본원에 양육함.

최종소견 [X] 입원등/입원등 기간 연장 필요
[] 퇴원등 필요

2017년 6월 10일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면허번호 236652 소속기관명 소속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관규희 (주인명) (주인명)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55조에 따라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관련 소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병원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별지 제28호

치료를 위한 입원등 동의서

보호대상은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영애	주민등록번호 201234-2345678 (별. 01)	연락처 02-1234567 010-8888-9999
-----------	----------------------------------	------------------------------------

환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동 죽리아파트 101동 102호

환자 입원등 일자
2017년 6월 10일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하여

문구 변경 예정

[X]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등이 가능

[]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등이 필요

[]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의 소견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즉시 퇴원등이 필요 함을 알립니다

2017년 6월 10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병원장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제43조 보호입원



첨부서류 ※ 별지 제26호

(입원등 [X]입원등 연장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보호대상은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영애	주민등록번호 80001-2345678 (별. 01)	입원등 기관등 명칭 국립정신건강센터
-----------	---------------------------------	------------------------

환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동 죽리아파트 101동 102호

1. 환자의 의견진술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7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 입원등을 연장하는 심사청구서, 또는 외래치료명령구서에 첨부될 서류입니다.
 2. 본 의견진술서는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에 첨부되어 입원등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 회의 심사해 심사자료로 제공됩니다.

1. 입원등 또는 그 연장에 대한 환자 동의 여부 () 동의함 [X]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사유: 아직 이상이 없는데 가족에게 귀찮아 귀찮아 입원하길 싫어함

환자 의견 진술서
2. 자의입원등이나 동의입원등의 의사 () 의사 없음 [] 의사 있음

3.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 이송 원함 [] 이송 원하지 않음
 이송요청 사유: 귀찮아 그만 두려고 하고, 시범이 너무 노숙함

4. 외래치료명령을 수용할 의사 () 있음 [X] 없음
 외래치료명령 수용/거부 사유: 같이 귀찮아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낌.

5. 기타 의견(명칭에 적절하여 첨부 가능)
 이곳에서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입원등, 입원등 연장,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환자 의견을 기록하며, 그 내용은 입원등 행위, 입원 등 연장 또는 퇴원등이 필요한 이유 등입니다.
 2. 의견서는 환자 본인만 작성하며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 이차 입원(제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구두로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정신건강전문요 원이 서명 후 제출합니다.
 본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7항 또는 제53조제3항 등에 따라 정신건 강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2017년 6월 10일
김영애 (주인명) (주인명)

환자가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 작성

작성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환자 의견진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환자 의견진술서 작성 → 접수 → 접수 → 동의한환자사 → 불응환자사 → 불응환자사 → 불응환자사

첨부서류 ※ 별지 제30호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성명 김영애	주민등록번호 711234-234567 (별. 01)	연락처 02-1234567-6789 010-3556-7890
-----------	---------------------------------	---

환자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길 1층 101호

성명 김영애	주민등록번호 53234-123456 (별. 01)	연락처 02-1234567 010-7777-6666
-----------	--------------------------------	------------------------------------

보호 의무자(I)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동 죽리아파트 101동 102호

성명 김영애	주민등록번호 53234-123456 (별. 01)	연락처 02-1234567 010-2222-6666
-----------	--------------------------------	------------------------------------

보호 의무자(II)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동 죽리아파트 101동 102호

본인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보호의무자(I): 김영애 (주인명) (주인명)
 보호의무자(II): 김영애 (주인명) (주인명)

입원등 연장에 대한 의견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현재 상태, 입원등 연장 필요성, 향후 퇴원을 계획 및 퇴원등 후 돌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보호의무자로서 중등 제언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의무자 I
환자는 병원에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누군가 지시를 시행되고 있다가 호소할, 집에 돌아오면, 예언과 같이 병행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보일 수리가 있음. 입원 연장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함.

보호의무자 II
병원에 이 많은 치료가 필요해보이며, 퇴원 이후에는 주거지 등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상담 시해관리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제43조 보호입원



3 심사통지 ※ 별지 제47호

명령 또는 결정 기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결정
-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통지확인 및 안내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된 심사결과명령서 및 조치내용 통지서 (별지 제47호) 확인
- 통지서를 받은 즉시 심사대상자에게 전달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심사결과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참고] 서식

심사결과명령서 및 조치내용 통지서

보건복지부 ()에 서신을 하고, 행정사한 ()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합니다.

심사청구일: 2017년 8월 15일

신청인명	유정복(본인)	연락처	02-123-4567
환자	주스희(본인) 관남구 신서동 죽리이곡로 101동 102호	연락처	010-3889-9999
보호의무자 I (보호자)	김영희(본인) 관남구 신서동 죽리이곡로 101동 102호	연락처	02-123-4567
보호의무자 II	김영희(본인) 관남구 신서동 죽리이곡로 101동 102호	연락처	02-123-4567
외래치료기관	관남구 신서동 죽리이곡로 101동 102호	연락처	02-200-0114

■ 조치사항

- 퇴원
- 임시 퇴원
- 3개월 이내 재심사: 퇴원명령서 통지일로부터 ()개월 이내 재심사
- 다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시설로 이송: 아동기연명 ()
- 자의입원등으로 전환
-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 외래치료명령: 외래치료기관명 ()
명령서 통지일로부터 ()개월 외래치료
- 입원등 기간 연장
- 계속 입원등 연장
- 전문개선조치명령(구체적 내용 표시)

■ 구체적인 사유
판결과 양상으로 인해서 원상관리의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통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보임

「정신건강복지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하여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7년 8월 20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귀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위 심사결과 및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 및 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보호입원



4 조치사항 이행

조치내용

- ① 계속입원 연장된 경우
 -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
 -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통지서(별지 제39호)
- ② 퇴원명령 통지: 지체 없이(72시간 이내) 퇴원
- ③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 기간 내에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연장 청구
- ④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이송: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송
- ⑤ 외래치료명령: 1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을 정함

※ 환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사실 통지(별지 제39호)
- 단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할 경우 보호자 동의로 같음

[참고] 현재 비자의입원 환자의 입원연장

3개월이 경과한 입원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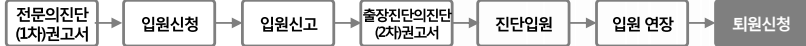
- ①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을 갖춰 청구해야 하나, 출장진단의료기관 혹은 정신건강전문주의가 부족한 경우 1개월 경과 후 3개월(총 4개월)까지 심사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② 첫 번째 연장심사 환자는 3개월 이내, 두 번째 연장심사 환자는 6개월 이내 연장심사 청구함

3개월 미만 입원환자

- ① 3개월 도래 시점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을 갖춰 심사 청구를 해야 하나, 출장진단의료기관 혹은 정신건강전문주의가 부족한 경우 3개월까지 심사기간 연장 청구 가능

제43조 보호입원

5 퇴원절차



1 퇴원신청서 작성

※ 별지 제22호

퇴원요건

-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소견 불일치 통지(14일 이내)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 통지(72시간 이내)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2018.5.30 이후 시행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명령통지(72시간 이내)
- 이 외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48시간 이내)

서식 작성방법

- 신청인(환자) 및 보호의무자 인적 사항 작성
- 퇴원신청 사유 작성
- 신청인 및 보호의무자의 자필 서명
- 정신의료기관 작성사항
- 실제 퇴원한 경우 실제 퇴원 일시 작성
- 작성 거부 또는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기재 및 보존

[참고] 서식

([동의] [✓]보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

보통등록번호 []에 사본사를 하고, 2호를 빈 칸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 여)	연락처	02-123-4567 010-8888-9999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우리아파트 101동 102호			
보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 여)	연락처	02-123-4567 010-7777-66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우리아파트 101동 102호			
신청인 (환자) 작성 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 여)	연락처	
	주소	관저와의 관계			

신청인(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또는 동법 제4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9항에 따라 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등을 하기 위하여 퇴원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퇴원 신청의 사유:
병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퇴원을 신청합니다.

※ 퇴원등 신청서 받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등을 시키거나, 퇴원등거부사유 및 퇴원등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환자가 여러 번 퇴원등 신청의사를 밝혀도 퇴원등 신청서는 1회만 작성됩니다.

2017년 6월 20일 14시(환자가 작성)
신청인: **전달** (신청인, 유무 등)
보호의무자는 위 퇴원신청에 동의합니다. 보호의무자: **전달** (신청인, 유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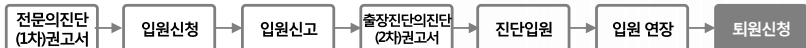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아래의 부분을 정신의료기관 확인담당자가 작성합니다.

실제퇴원일시 (퇴원한 경우)	2017년 6월 22일
퇴원신청서	[] 작성거부(사유:)
미작성사유	[] 작성불능(사유:)

제43조 보호입원

5 퇴원절차



2 퇴원등 결정사항

※ 별지 제23호

퇴원결정

- 환자 및 보호자에게 퇴원 통지서(별지 제32호)
- 입퇴원관리시스템에 퇴원 사실 및 사유 입력
- 지체 없이 퇴원(48시간 이내-주말이나 법정공휴일 제외)

※ 환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사실 통지(별지 제39호)
- 단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할 경우 보호자 동의로 갈음

퇴원거부

-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자타에 위험성이 지속될 경우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거부사실 서면 통지
 - 퇴원 거부사유 및 퇴원 심사청구권(별지 제23호)

[참고] 서식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청구권 ([✓] 고지서 [] 통지서)

보통등록번호 []에 사본사를 하고, 2호를 빈 칸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 여)	연락처	02-1234-5678 010-1234-5678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번지 2층 201호			
보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 여)	연락처	02-1234-5678 010-2222-3333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23번지 2층 201호			
입원 기관	기관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연락처	02-2204-0114	
	주소	서울시 팔도구 용마산로 127			

- (환자[✓] 보호의무자[])는 [✓]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하여 퇴원등이 제한되는 동의입원등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입원을 하여 퇴원등이 제한되는 보호입원등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 퇴원등이 제한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수에 욕이 들어있다는 망상으로 의사가가 행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위 환자들에 대한 공격성의 발현으로 자타에 위험이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환자가 동의입원등 환자인 경우에는 퇴원등 제한 기간 동안 보호입원등이나 행정입원등 환자로 전환될 수 있고, 보호입원등 환자인 경우에는 향후 일정기간 퇴원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원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조사원 대면조사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입원등 환자가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은 경우라면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원적합성심사료: 조사원 대면조사신청은 '18.5.30.부터 가능합니다.
- 퇴원등 심사 청구서류는 정신의료기관 내 국가인권위원회 전정할 옆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등에서는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작성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 보호의무자도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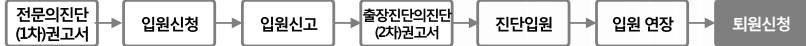
2017년 월 일
환자서명: _____ 서명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서명 비확정 사유 기입 한 추가 예명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귀하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서식을 환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환 유은 환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전자, 이력 및 조사결과 등 환자 이상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43조 보호입원

5 퇴원절차



4 퇴원등 권리구제 안내

※ 별지 제4호

권익보호

- 입원이나 입소가 위법하거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퇴원이나 퇴소를 청구하거나 진정할 수 있음을 안내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
- 법원(인신보호법 제3조): 인신보호구제청구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진정

협조사항

- 환자가 퇴원등 권리구제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서식 및 필기도구를 제공
- 작성한 청구서 등을 송부

[참고] 서식

권익보호 안내서

아래는 입원(입소) 환자 권익보호 및 치료와 요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법령이 규정한 내용입니다. 환자 및 직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 및 가혹행위의 금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합니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입원 또는 입소한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 72조제2항).

2.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를 한 사람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 다만, 환자의 변호인이나 대리인(변호인이나 대리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와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53조).

3. 격려·강박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를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으나 그 요건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며, 그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법 제75조).

4. 작업요법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를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일정한 유형과 적양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직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환자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5. 환자의 권리

가. 입원 또는 입소한 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의 거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권리와 절차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6조).

6. 퇴원등 권리구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 인신보호구제청구, 진정

가. 환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입원이나 입소가 위법하거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법원(인신보호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퇴원이나 퇴소를 청구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가 퇴원등 권리구제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및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청구서 등을 송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본이 권익보호 안내서를 환자가 읽게 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3조 보호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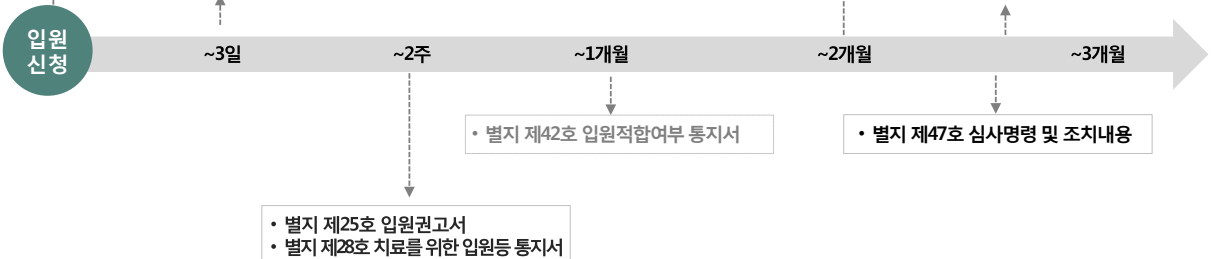
6 행정관련 구비서류 - 입원 기간 연장의 경우

- 별지 제24호 보호입원신청서
- 별지 제26호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 별지 제27호 입원신청서 작성지연사유서
- 별지 제25호 입원권고서
- 별지 제31호 입원통지서
- 별지 제4호 권익보호안내서(비치)
- 별지 제3호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비치)
- 별지 제1호 및 2호 권리고지

- 별지 제25호 입원신고서
- 입퇴원관리시스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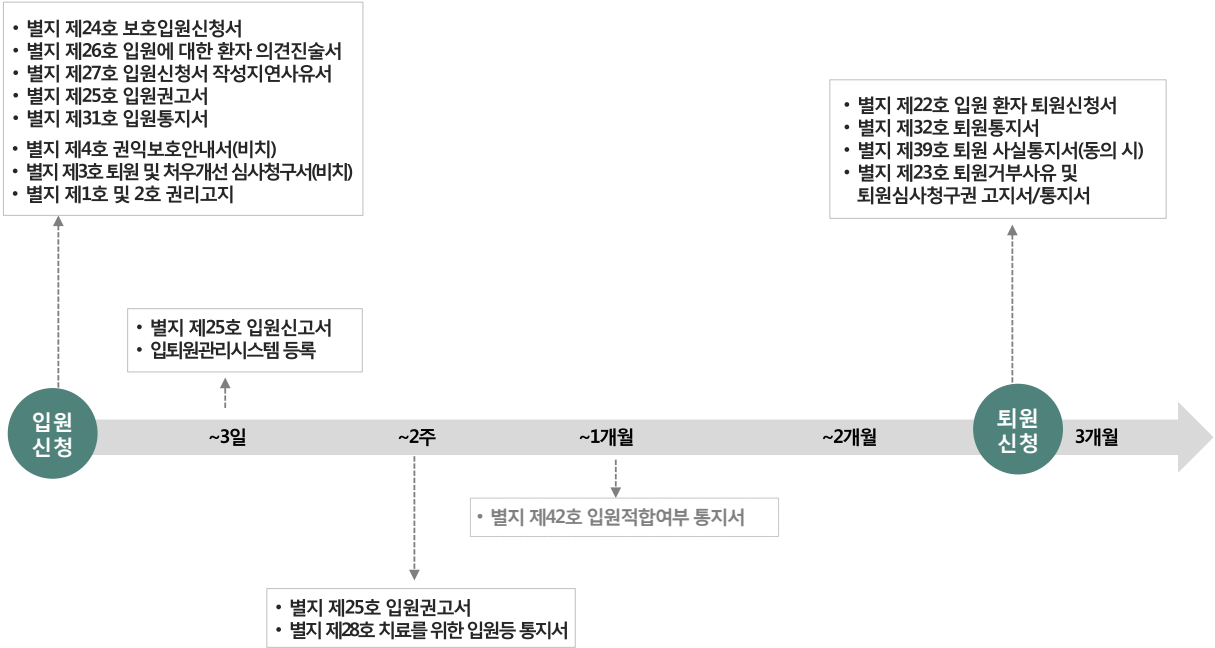
- 별지 제29호 입원 연장 심사 청구서
- 별지 제28호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 별지 제25호 입원권고서
- 별지 제26호 환자의견진술서
- 별지 제30호 입원 기간 연장동의서

- 별지 제31호 입원기간연장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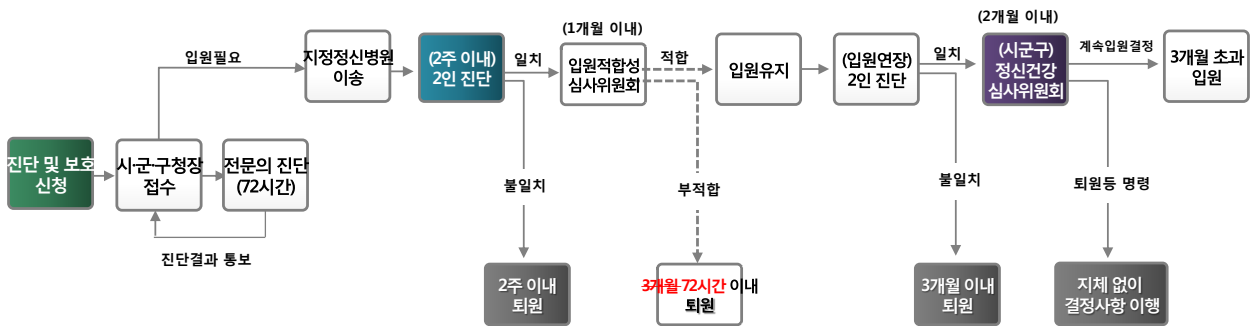


제43조 보호입원

6 행정관련 구비서류 - 입원 기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제44조 행정입원



* 입원 기간은 최초 입원 시 3개월, 1차 입원 기간 연장을 한 경우 3개월, 1차 입원 기간 연장 이후는 6개월임.

진단 및 보호 신청	2인 의사 진단	입원적합성심사	계속입원 심사	퇴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의 또는 전문요원 진단 및 보호신청(별지 제3호) <p>* 진단 및 보호요청(별지 제4호)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요청할 수 있음</p> <p>※ 시행규칙 제37조1항~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 진단 및 행정입원권고서 작성(별지 제35호) <p>※ 시행규칙 제37조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 당시의 증상 및 입원 절차, 향후 치료입원(3개월) 필요성을 심사 입원일 기준 최대 3일 이내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 1개월 이내 심사 통지(별지 제40호, 별지 제35호) <p>※ 시행규칙 제40조, 4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입원 또는 퇴원, 기간 내 재심사 등을 결정 입원만료일 1개월 전 사군구 보건소에 청구(별지 제29호, 제35호, 제26호, 제28호)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 필요 <p>※ 시행령 제47조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견불일치(2주이내) 입원부적합통지(72시간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명령통지(72시간이내) 사군구청장의 입원해제(지체 없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원 사실통지서(동의 시)(별지 제39호)

제44조 행정입원

1 진단 및 보호 신청

진단 및 보호요청

진단 및 보호신청

1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제출

※ 별지 제33호

서식작성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신청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 피신청인: 정신질환의심자의 인적 사항과 증상 및 행동 개요 기입
 - 현재 소재지는 면담을 진행한 장소 기입
 - 증상 및 행동의 개요는 기급적 한글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
- 보호의무자: 정보불충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란
- 신청확인사항
 - 신청요청자: 보호의무자, 경찰관, 인근주민 기타 중에게 체크
 - 정신질환의심 유무 체크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 해할 위험 유무 체크: 별표 13참고
 - 보호의무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유무 체크
 - 신청을 하게 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

참고 진단 및 보호요청(경찰관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별지 제34호

[참고] 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본 신청서는 []에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필수 기재 사항이 작성함을 뜻합니다.

신청인	성명: 권국희	소속기관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연락처: 02-2388-0114
피신청인	성명: 도광남	생년월일: 941228-223957	성별: 남 () 여 ()
보호의무자 (보호자)	성명: 권국희	피신청인과의 관계: 권국희	연락처: 02-2388-5678

신청 확인사항

- 신청요청자: () 보호의무자 () 경찰관 () 인근주민 () 기타 ()
- 정신질환의 의심: () 있음 () 없음
-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있음 () 없음
-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있음 () 없음
-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있음 () 없음
- 신청을 하게 된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 광역정에서 광견을 구입하여 도광, 아르미이트생물 항해 소리를 지르고, 광견을 던졌. 옷, 옷을 벗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광견을 광함.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권국희 2017년 6월 14일 (직인/인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심사) →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 통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

제44조 행정입원

2 전문의진단

진단 및 보호요청

진단 및 보호신청

전문의원진단

1 행정입원 권고서 작성

※ 별지 제35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위한 입원필요 판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72시간 이내

서식작성방법

- 환자의 기본적 인적 사항과 병력 작성
- 증상: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 증상에 체크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칠 위험 별표 13
- 행정입원 필요 여부 및 근거: 아래 항목 중 하나 체크
 - 외래통원치료 가능성 자의입원 가능성 보호입원 가능성
 - 외래치료명령 가능성, 행정입원 이외 없음
 - 행정입원 필요 사유: 진단 또는 치료 중 진단 체크

※ 진단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 시군구청장에 결과 회신
- 최대 주까지 입원 가능하며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송 필요

[참고] 서식

행정입원 권고서

본 권고서는 []에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필수 기재 사항이 작성함을 뜻합니다.

성명: 권국희	주민등록번호: 650505-1115678	() 급여 1종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척동 2가 205-2 205호	직업: 자영업자	작성 일자: 2017년 6월 14일
환자: 권국희 (OOO-10)	최초 진단일: 2017년 6월 14일	최초 발병시기: 2015년 1월 10일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필요 여부에 관한 전문의 의견

※ 최종소견에서 행정입원 필요 의견을 제시(제거)하는 경우에 2주의 병위진단을 위한 입원(도) 또는 9개월의 병위(치료)를 위한 입원(도) 내에서 행정입원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단명 (ICD-10)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 환각, 망상 () 우울 () 행동조절장애 () 기타 ()
자신의 건강 안전에 대한 위험 여부 및 근거	위험 여부 () 있음 () 없음 근거: 대외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으며, 폭력적으로 행동함.
타해 위험 여부 및 근거	위험 여부 () 있음 () 없음 근거: 대외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으며, 폭력적으로 행동함.
행정입원 필요 여부 및 근거	() 통원치료 () 자의입원 () 보호입원 () 외래치료명령 () 행정입원 필요 없음 행정입원통이 필요한 이유: () 진단을 위해 () 치료를 위해 근거: () 행정입원통이 필요 () 행정입원통 불필요

최종소견: () 행정입원통 필요 () 행정입원통 불필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4항 또는 제6항,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통 관련 소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면허번호: 23662 소속기관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국희 (직인/인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44조 행정입원

3 입원신고



3 입원신고서 작성

※ 별지 제40호

서식작성방법

- ⑦ 증상: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 증상에 체크
- ⑧ 위험성의 정도: 별표 13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판단
- ⑨ 치료요양필요성: 증상 및 위험성의 정도를 통합하여 평정
- ⑩ 환자이송방법: 경찰, 구급대원, 가족, 응급환자이송단, 자택적내입기타등
- ⑪ 응급입원진행 또는 동의입원에서 전환여부 해당 사항 체크
- ⑫ 입원예상기간: 예상기간을 체크하고 그에 대한 근거 사유를 기술
- ⑬ 신체적 장애나 질환
- ⑭ 보호의무자 및 후견인 관련 사항을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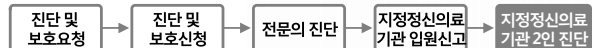
참고 입원신고서 양식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구현되므로 입력필요

[참고] 서식(뒷면)

증상 (복수체크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각, 망상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행동조절장애	<input type="checkbox"/> 흥분, 조만 <input type="checkbox"/> 조중상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식장애 <input type="checkbox"/> 인격의 병적 상태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신의 안전·건강위험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타해 위험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환자 병원·사별이송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찰관 <input type="checkbox"/> 환자의 자발적 내원 <input type="checkbox"/> 동의입원 등 전환 (전환일자: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응급입원 등 전환 (전환일자: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구급대원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응급환자이송단	
응급입원 진행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급입원 진행함 <input type="checkbox"/> 응급입원 진행 안 함		
동의입원 등 전환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입원 등에서 전환함 (전환입원 일자: 년 월 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입원 등에서 전환 안 함		
신체적 장애나 질환	<input type="checkbox"/> 있음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입원과 관련된 약물중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독 없음 <input type="checkbox"/> 알코올 중독 <input type="checkbox"/> 기타 약물 중독 <input type="checkbox"/> 미상		
보호의무자 I	성명: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생년월일: 531234-123456 (년) (월) (일)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101동 102호 전화번호: 02-1234567-1234	연락처: 02-1234567-1234 010-7777-6666 환자와의 관계: <input type="text"/>
보호의무자 II (보호입원의 경우만 기재)	성명: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생년월일: 531234-123456 (년) (월) (일)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101동 102호 전화번호: 02-1234567-1234	연락처: 02-1234567-1234 010-2322-6666 환자와의 관계: <input type="text"/>
후견인 (보호의무자가 후견인인 경우만 기재)	후견유형: <input type="checkbox"/> 영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가정법원 사전허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사전허가번호:) <input type="checkbox"/> 없음 후견관련 가정법원 명칭: <input type="text"/> 후견관련 사건번호: <input type="text"/>		
환자 지정 보호의무자 (필요시 입력)	성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환자와의 관계: <input type="text"/>
입원 의뢰기관 (응급입원 제외)	성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의뢰기관명: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환자와의 관계: <input type="text"/>	환자와의 관계: <input type="text"/>

제44조 행정입원

4 2인 전문의 진단



1 지정정신의료기관 2인 진단

※ 별지 제25호

2인 의사 진단 요건

-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
- ①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 진단
- ② 입원 2주 이내 입원권고서 작성

서식작성방법

- ① 환자인적사항작성
- ② 입원유형 및 기존 진단명작성
- ③ 증상: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 증상에 체크
- ④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별표 13
- ⑤ 최종조건: 입원 필요 또는 퇴원 필요
- ⑥ 면허번호, 소속기관명, 성명 서명 작성

참고 입원권고서는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출력하여 서명 후 보관

[참고] 서식

() 입원 등 입원 등 기간 연장 권고서

※ 이 권고서는 ()에 표시된 사항을 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주체가 바뀔 수 있다.
* 주체: 의료인, 수사기관, 진단사, 진료기록부 등 중 필요에 의해 표시함.

성명: <input type="text"/> 직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년) (월) (일)에	<input type="checkbox"/> 1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원 <input type="checkbox"/> 2중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소: <input type="text"/> 내칭이류(주소): <input type="text"/> 키레량상 비 판공, 권형적인 권형성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101동 102호	연락처: 02-1234567-1234 010-8888-9999	
근거: 입원등/입원등 기간 연장(해정) 일자: 2017년 9월 10일	입원등 횟수(이전 기관 입원한 횟수 포함) 2회	또 장부파일이 합은 모두 대략적으로 기술	
입원유형: <input type="checkbox"/> 보호입원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입원 등 <input type="checkbox"/> 응급입원	조원번호: <input type="text"/>		
증상 (복수체크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각, 망상 <input type="checkbox"/>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동조절장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흥분, 충동성 <input type="checkbox"/> 조중상태 <input type="checkbox"/> 의식장애, 조만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환자를 비난하는 문헌이 심각하여, 언제라도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위험이 있음.		
타해 위험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가족과 관련된 피해양상으로 인해 강력한 폭언과 폭력이 있으며, 내원 강요에도 난폭한 행동을 보여 분원에 방류됨.		
최종조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원등/입원등 기간 연장 필요 <input type="checkbox"/> 퇴원등 필요			
의사 면허번호: 23652	소속기관명: <input type="text"/>	2017년 6월 10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 의 면허번호: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직책: <input type="text"/>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55조에 따라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관련 소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 국립정신병원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7인

제44조 행정입원

4 지정정신의료기관 2인 진단



2 2인 진단 결과 및 입원통지 ※ 별지 제38호

조치사항

- ① 2인 진단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 3개월까지 입원 가능
- ② 2인 진단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2주 이내 퇴원

- 통지내용: 입원일로부터 최장 3개월까지의 입원가능 여부

통지사항

- ①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사실에 대해 서면 통지(별지 제38호)
- ② 통지내용
 - 입원기간 만료 전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음(18530 이후)
 - 입원연장심사를 받아 입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18530 이후)가능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청구 가능

[참고] 서식

행정입원 등 통지 및 퇴원 등 심사 청구권 고지

성명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91129-2291567(남, 여)	연락처 02-1234567 010-8888-9999
환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리야로 101동 102호	입원통지 일자 2017년 6월 12일	입원통지 기간(예정)일 2017년 9월 12일
입원통지한 지정정신의료기관 기관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곡로 127	연락처 02-2200-0114 담당자 이영희

환자 및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의 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8항에 따라 행정입원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환자는 행정입원통지 환자로서 입원통지 기간 만료 전에 입원적합성심사를 받거나, 입원통지 연장심사를 받아 퇴원통지를 하거나 입원통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입원통지 환자는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를 신청(정신의료기관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가능)할 수 있으며,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통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원 대면조사신청은 '18.5.30.부터 가능합니다.
4. 퇴원통지 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정신의료기관 내 국가인권위원회 건정할 외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작성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5. 보호의무자도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통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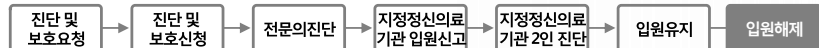
2017년 6월 14일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환자 / 보호의무자(보호자) 귀하

제44조 행정입원

5 입원해제



1 행정입원해제 통지서 작성 ※ 별지 제49호

입원해제 요건

-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① 입원만료일 7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해제 권고
- ② 시군구청장은 행정입원 해제 통지서 송부(별지 제49호)
- ③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퇴원통지(별지 제32호)

※ 환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사실 통지(별지 제39호)
- 단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할 경우 보호자동의로 갈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

서식 작성 방법

- ① 환자: 기본적인적사항
- 입원을 하고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 명칭 기입
- ② 환자 최초 입원 일자 및 퇴원에정일 기입

[참고] 서식

행정입원 등 해제 통지서

※ 해당 칸은 []에 기재 시 * 표시가 바뀝니다.

성명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91129-2291567(남, 여)	연락처 02-1234567 010-8888-9999
환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리야로 101동 102호	입원통지 하고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명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 최초 입원통지 일자 2017년 6월 12일	환자 퇴원통지 예정일 2017년 9월 12일	

위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입원통지를 해제하오니, 환자를 퇴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 계속 입원통지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2. 최초로 행정입원통지를 한 날로부터 정한 3개월 이내의 입원통지 만료일 혹은 입원통지 기간 연장 후 입원통지 만료일이 되었는데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퇴원통지를 할 경우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2017년 6월 25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지정정신의료기관등의 장 귀하

제44조 행정입원



1 입원 연장 신청

요건

-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
- 연장심사 전 필수절차
 - 동일병원(지정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2인이 진단
 - 국립정신건강센터장/국립정신병원장이 통지한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별지 제28호) 확인
 - 소견 일치된 경우 연장심사 청구

- ※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퇴원 필요
-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 이후 입원 기간 연장: 입원연장일 기준 6개월 이내

입원 연장 신청 시기

- 입원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청구

- ※ 입원 기간 연장 청구 철회
-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퇴원한 경우
 - 자의 또는 동의입원으로 전환한 경우

청구서류

- 입원연장 심사 청구서(별지 제29호)

- 첨부서류 목록
 - ①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별지 제28호) 및 1차 입원기간 연장 권고서(별지 제35호)
 - ② 환자 본인의 의견진술서(별지 제26호)

제44조 행정입원



2 입원 연장 심사청구서 작성 ※ 별지 제29호

정신의료기관의 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서식 작성 방법**
- ① 환자인적 사항작성
 - ② 연장심사대상의 입원유형 체크
 - ③ 진단·최초발병시기작성
 - ④ 금회 입원일자·입원만료예정일 연장심사청구서 제출일작성
 - ⑤ 심사청구횟수작성
 - ⑥ 입원횟수: 다른 기관 입원한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정보파악이 힘든 경우 대략적으로 기술

참고 입원 연장심사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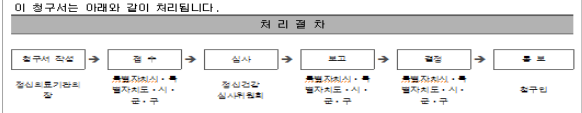
[참고] 서식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성명	주인등록번호	입원유형	입원처
김영태	401204-2563379 (보)	[] 금여 1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형 [] 금여 2종 [] 기타	02-1234-987 010-8888-9999
주소	연락처	직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테라아파트 101동 102호	02-1234-987	직업	
진단(ICD-10)	입원등 만료예정일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제출일	
F30.0	2017년 6월 29일	2017년 9월 29일	2017년 9월 25일
금회 입원일자	입원등 횟수(이전 기관 포함 횟수 포함)	입원등 횟수(이전 기관 포함 횟수 포함)	
2017년 6월 29일	2017년 5월 19일	2회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과 동법 제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등 연장 심사를 청구합니다.

2017년 9월 25일

-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통지서 2부(보호입원등에 한함)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입원등 연장 소견서 1부
 3. 치료를 위한 퇴원등 통지서 1부
 3. 입원등 연장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1부



제44조 행정입원



첨부서류 ※ 별지 제25호

()입원등 [V]입원등 기간 연장 신고서

보통환자 ()에 보호신청 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환자 ()로서, 조양사, 조양사, 조양사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입니다.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1종 (V)보통 ()급여 2종 ()기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39길 101동 102호	연락처	02-1234567 010-9876543

내담이유(주 소스)
치매양상 및 혼란, 광범위한 폭력성
 급회 입원등/입원등 기간 연장(예정) 일자
 2017년 7월 10일

입원유형
 보호입원등 행정입원등 응급입원

(기존)진단명(100-10)
 조현병

증상
 환각 망상 흥분, 충동성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조동상태 의식장애, 혼미
 행동조절장애 기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a. 자신의 안전·건강 위협여부 (V) 있음 없음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환자를 비난하는 환청이 심하여, 언제라도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위험이 있음.
 b. 타해 위협여부 (V) 있음 없음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가족과 병행된 치매양상으로 인해 광범위한 폭력과 폭력이 있으며, 내원 당일에도 난폭한 행동을 보여 본원에 감금함.

최종소견
 입원등/입원등 기간 연장 필요
 퇴원등 필요

의사 면허번호
 236652

소속기관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의
 권유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병원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별지 제26호

()입원등 [V]입원등 연장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보통환자 ()에 보호신청 하기 바랍니다.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등 기록등 명칭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39길 101동 102호	연락처	

- 환자의 의견진술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 35조제 1항 및 제 7항 또는 제 53조제 1항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 입원등을 연장하는 심사청구서, 또는 외래치료명령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입니다.
- 본 의견진술서는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에 첨부되어 입원등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 심사에 심사자료로 제공됩니다.

환자 의견
 1. 입원등 또는 그 연장에 대한 환자 동의 여부 ()동의함 (V)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사유: 아직 이성이 있는데 가족에게 의해서 남이도 입원이 되겠음

환자 의견
 2. 자의입원등이나 동의입원등의 의사 (V)의사 있음 의사 없음
 진술서
 3.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이송 있음 이송 없음
 이송요청 사유: 치료의가 잘 안나오고, 시력이 너무 나빠짐

환자 의견
 4. 외래치료명령을 수용할 의사 ()있음 없음
 외래치료명령 수용/거부 사유: 같이 치료의도 받을 필요성 못 느낀다.

환자 의견
 5. 기타 의견(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가능)
 이것에서 이미 항의 나갔고 끝났습니다

환자
 2017년 7월 10일

환자 의견
 1. 입원등, 입원등 연장,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환자 의견을 기록하며, 그 내용은 입원등 청구, 입원등 연장 또는 입원등이 필요한 이유 등입니다.

2. 의견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 이하 같다)이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구두로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서명 후 제출합니다.

본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 35조제 1항 및 제 7항 또는 제 53조제 3항 등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환자
 2017년 7월 10일

환자 의견
 ○ 환자가 다음 직업에 관한 사유: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환자 의견진술서도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환자 의견
 환자 의견진술서 → 심사결과명령서 → 통지 → 통지확인 → 통지확인 → 통지확인 → 통지확인 → 통지확인

제44조 행정입원



3 심사통지 ※ 별지 제47호

명령 또는 결정 기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결정
-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통지확인 및 안내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된 심사결과명령서 및 조치내용 통지서 (별지 제47호) 확인
- 통지서를 받은 즉시 심사대상자에게 전달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심사결과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참고] 서식

심사결과명령서 및 조치내용 통지서

보통환자 ()에 보호신청 하고, 보호신청을 ()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접수일: 2017년 7월 1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입원유형
 보호입원등 (입소) 행정입원등 (입소)

보훈의무자 () 없음
 주소: 성년월일: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보훈의무자 () 없음
 주소: 성년월일: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입원등 기간 연장
 주소: 성년월일: 연락처:

■ 조치사항

- 퇴원등
- 입사 퇴원등
- 3개월 이내 재입사: 퇴원등 명령서 통지일로부터 ()개월 이내 재입사
- 다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로 이송: 이송기관명 ()
- 자의입원등으로 전환
-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 외래치료명령: 외래치료기관명 ()
 명령서 통지일로부터 ()개월 외래치료
- 입원등 기간 연장
- 계속 입원등 연장
- 처우개선조치명령(구체적 내용 적시):

■ 구제적 사유

「정신건강복지법」 제 53조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하여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환자의료기관등의 장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귀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위 심사결과 및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 및 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행정입원



4 조치사항 이행

조치내용

- ① 계속입원 연장된 경우
 -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
 -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 통지서(별지 제33호)
- ② 퇴원명령 통지: 지체 없이(72시간 이내) 퇴원
- ③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 기간 내에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연장 청구
- ④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이송: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송
- ⑤ 외래치료명령: 1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을 정함

※ 환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사실 통지(별지 제39호)
- 단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할 경우 보호자 동의로 같음

[참고] 현재 행정입원 환자의 입원 연장

행정입원

- ①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을 갖추 심사청구
- ② 2017.2.28 이전에 입원한 환자(3개월 이상 입원)의 경우 첫 번째 연장심사자는 이후 3개월, 두 번째 연장심사자는 이후 6개월로 함

제44조 행정입원

참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 또는 입소자

입원유형 변경 필요

개정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보호입원 조항 삭제

조치사항

- ① 병식이 있고 치료에 협조적인 경우: 자의 또는 동의입원으로 전환
- ②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호입원으로 전환
- ③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행정입원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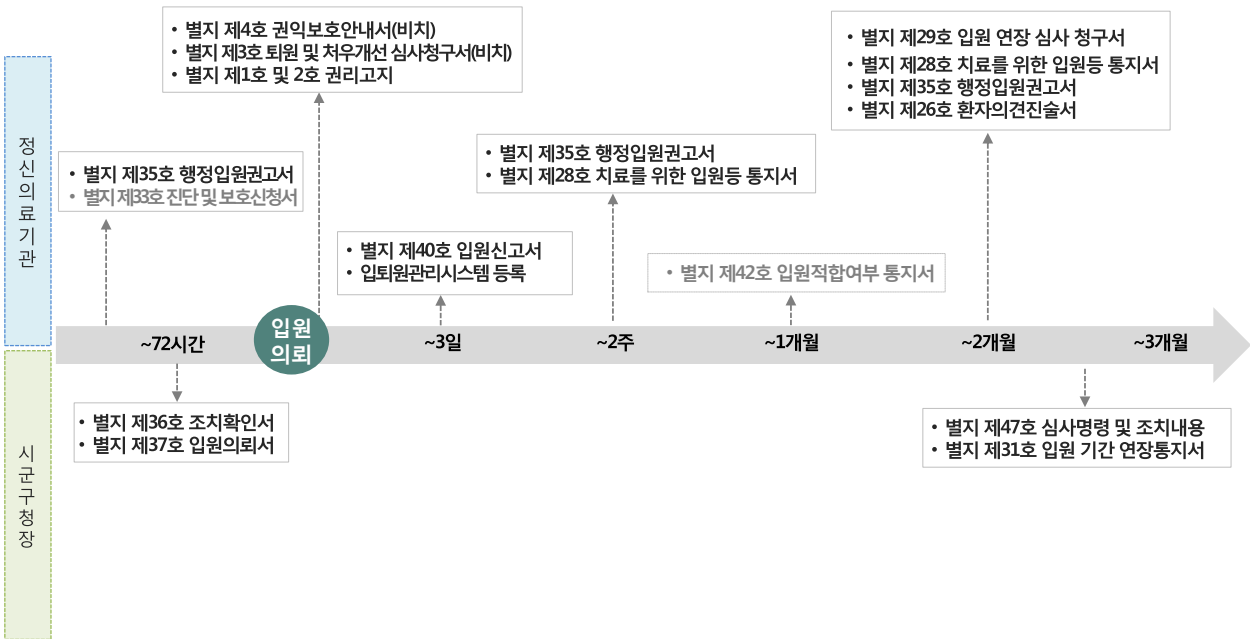
전환 절차

- 보호의무자가 없어 행정입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①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별지 제33호) 및 시군구청장에 신청
 - ② 72시간내 전문의 진단(별지 제35호) 및 시군구청장에 결과송부
 - ③ 지정정신의료기관 이송(최대 2주까지 입원 가능)
 - ④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별지 제35호) 최대 3개월까지 입원 가능

※ 단 현재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행정입원으로 전환 불가 다른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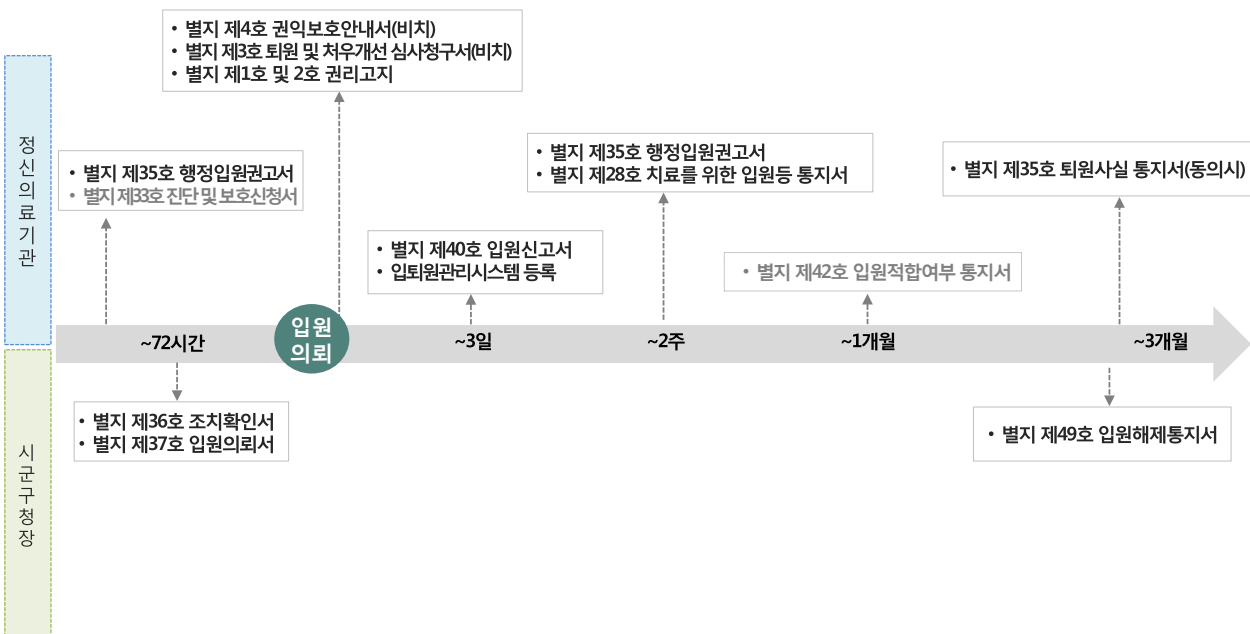
제44조 행정입원

7 행정관련 구비서류 - 입원 기간 연장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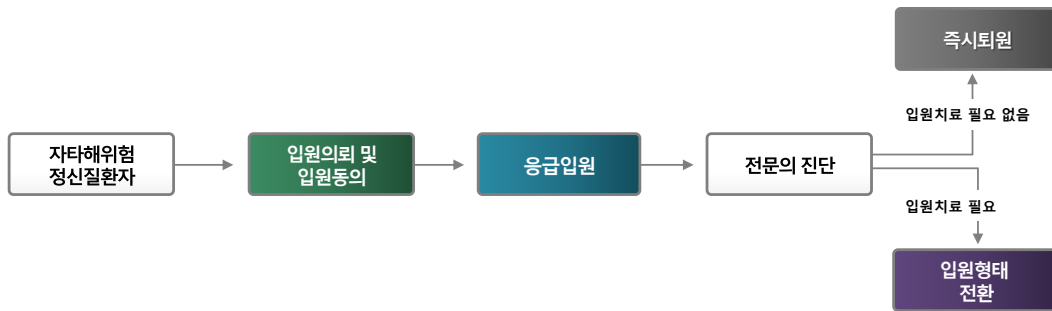


제44조 행정입원

7 행정관련 구비서류 - 입원 해제의 경우



제50조 응급입원



- | | | | |
|---|--|---|---|
| 입원의뢰 및 입원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으로 추정되고 자타해위험성이 높은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의뢰(별지 제44호) <p>※ 시행령 제35조1항</p> | 응급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이내 (공휴일은 제외) 기간 동안 입원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응급입원 사실 통지(별지 제45호) 응급입원권고서(별지 제25호) 작성 <p>※ 시행규칙 제46조2항-3항</p> | 입원형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타해 위험(별표13)을 토대로 계속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중 하나의 형태로 전환 <p>※ 시행령 제35조3항-4항</p> | 퇴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의진단 결과 위험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 |
|---|--|---|---|

제50조 응급입원

1 입원 의뢰 및 동의



1 응급입원의뢰서 작성

※ 별지 제44호

서식 작성 방법



- 신청인: 발견자(경찰, 보호의무자,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 피신청인: 정신질환의심자의 인적 사항과 증상 및 행동 개요 기입
 - 현재 소재지는 면담을 진행한 장소 기입
 - 증상 및 행동의 개요는 가급적 한글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
- 보호의무자: 환자가 면담 가능할 경우 기입
- 확인사항
 - 정신질환 의심 사유: 정신증기분장애 급성 혼란상태 등 관찰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해할 위험 판단 근거: 자살사고, 자살위험 등 자살관련 행동, 위험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위협 등의 타해 위험 행동 관찰
 - 다른 입원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 보호의무자와 연락 또는 신원 파악 불가, 행정입원으로 전환 불가한 사유 등 기술
 - 응급입원 의뢰하게 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
- 응급입원 동의의사 및 동의 경찰관: 관련 사항 작성 후 서명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

[참고] 서식

응급입원 의뢰서			
필수항목	필수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본인 또는 소속기관)	연락처	
피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남, 여)
	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 증상 및 행동의 개요		
보호의무자 (보호자)	성명 1. 정신질환의 의심 사유 : 2.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판단 근거 : 3.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판단 근거 :	관자와의 관계	연락처
확인사항	4. 자의입원, 보호입원 등 다른 입원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 : 5. 응급입원 의뢰를 하게 된 경우 (발견장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응급입원 동의의사	면허번호: 소속기관:	위 응급입원 의뢰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응급입원 동의경찰관	직급: 소속:	위 응급입원 의뢰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입원을 의뢰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제50조 응급입원

1 입원 의뢰 및 동의



2 응급입원통지서 작성

※ 별지 제45호

서식작성
방법

정신의료기관의 장

→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

- ① 환자: 기본적 인적 사항 및 응급입원일 및 만료예정일 작성
- ② 입원기관에 관한 사항 작성

[참고] 서식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보, 거)	
입원기관	입원일	입원기간	만료예정일
	월	년	월
입원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주소		

환자의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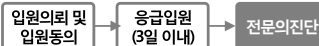
1. 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위 입원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기간으로 응급입원 되었습니다.
2. 환자가 응급입원된 것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고 발견되었으며,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등의 다른 입원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 환자는 응급입원 환자로서 입원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 지나면 입원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응급입원 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의 신청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등 의뢰에 따라 다른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환자는 응급입원 이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되며,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각 퇴원하게 됩니다.
5. 보호의무자(보호자)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 입원기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보호의무자(보호자) 귀하

제50조 응급입원

2 전문의 진단



1 전문의 진단

입원요건

-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고 (제48조제3항제1호)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별표13 제48조제3항제2호)

서식작성
방법

- ① 환자 인적 사항 작성
- ② 입원유형: 응급입원체코
- ③ 증상: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 증상에 체코
- ④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별표13)
- ⑤ 최종소견: 입원등/입원등 기간 연장 필요 또는 퇴원등 필요
- ⑥ 면허번호, 소속기관명, 성명 서명 작성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

[참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별표13)

1호 질병에 관한 기준

- 조증,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 조현병, 분열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
-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의 중독성 장애
- 기질성 정신장애, 인격장애 등

2호 증상에 관한 기준

- 환각, 망상, 흥분 및 공격성
- 의식장애 및 혼미
-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 고양감, 들뜬 기분, 충동성

3호 자신의 건강 안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성 기준

- 자살/자해 시도, 및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 증상의 악화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물질적 피해위험
-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험행위, 성적 문제행동 등 타인의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 방화, 기물파손, 타인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감을 주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참고 판단의 방법

- 제 1호, 제 2호, 제3호의 각 기준과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
- 기왕력, 현 병력과 이와 관련된 행위 및 증상을 고려하여 판단

3 입원형태 전환



1 입원형태 전환 시 구비서류

자의 또는 동의입원으로 전환

- 입원신청서 작성(별지 제20호)
 - 입원권고서(별지 제25호)
- ※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필요

보호입원으로 전환

- 보호입원신청서 작성(별지 제24호)
- 입원권고서(별지 제25호)

고지사항

- ①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입원형태 전환 사실 고지
- ② 권리고지(별지 제1호)의 내용을 구두로 고지
서식을 제공한 후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행정입원으로 전환

- ①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별지 제33호) 및 사군구청장에 신청
- ② 7시간내 전문의진단(별지 제35호) 및 사군구청장에 결과송부
- ③ 지정정신의료기관 이송 (최대 2주까지 입원 가능)
- ④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별지 제35호) 최대 3개월까지 입원 가능

※ 단 현재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지정정신의료기관인 경우 이송은 불필요

※ 고지내용

- 입원(입소) 유형에 따른 퇴원(퇴소) 방식
- 보호 및 행정 입원(입소) 환자의 권리
- 입원적합성 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18530 이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 처우개선 심사청구

3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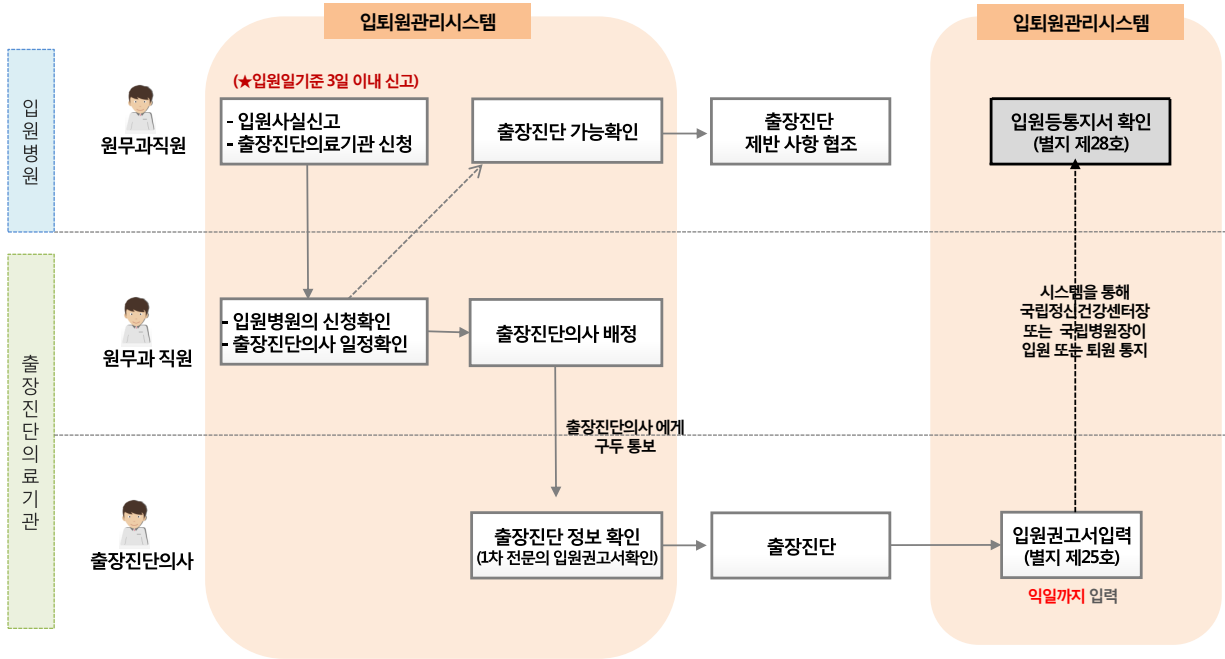
2인 의사 진단 제도

입퇴원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

입퇴원 관련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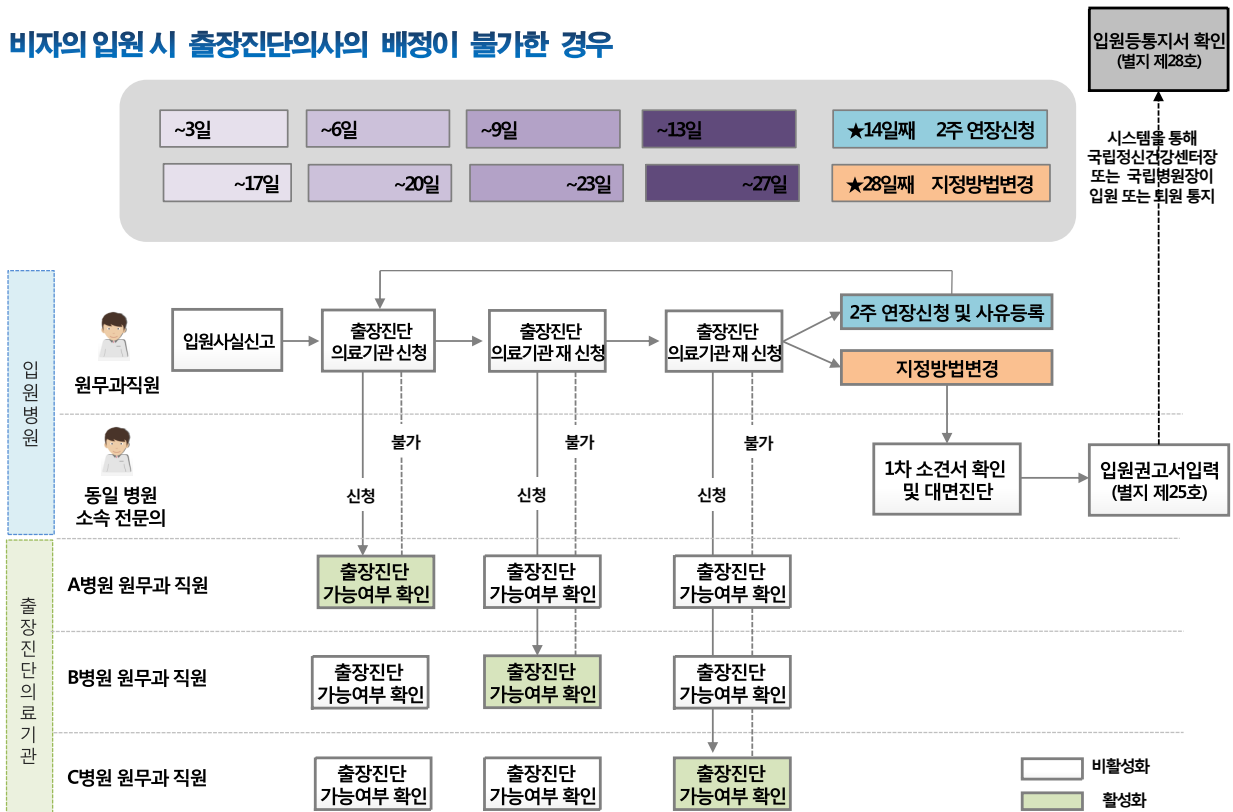
2인 의사 진단제도 (행정인력)

❖ 비자의 입원 시 출장진단 의사의 배정이 가능한 경우



2인 의사 진단제도 (행정인력)

❖ 비자의 입원 시 출장진단 의사의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2인 의사 진단제도 (행정인력)

1 행정인력 업무절차 (입원병원)



1 입원신고 및 배정신청 절차 ※ 별지 제40호

- ① 입 퇴원 관리시스템 (www.amis.go.kr)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입원신고 입력
※ 신고주체는 병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② 입력 시 출장진단의료기관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

• 서로 다른 2인 전문의 진단 예외
(1단계) 출장진단의료기관 및 소속 전문의가 부족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 이내 진단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2주 연장신청
(2단계) 추가 기한 연장 시 진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동일 병원 소속 전문의 지정방법 변경신청

※ 각 기간의 종료시점 전일 시스템에서 알림 서비스가 발송 됨

2 방문진단 시 협조

방문 전

- 방문일정을 병동 의료진에게 고지
- 대상자 관련기록(차트 등)을 제공
- 안전한 공간, 지원인력 등 제반 사항 협조

방문 시

- 출장진단 의사가 대상자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할 시 협조
- 대상자 및 출장진단 의사의 신변보호

• **입원병원 협조사항**
- 출장진단 의사의 방문관리대장 기록사항 확인 및 병원 내 3년간 보관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주차 등 제반 사항 협조
- 출장진단 의사의 정보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인력(대체근무자) 지정하여 정해진 담당자의 연락처, 근무부서를 시스템 운영자에게 고지

2인 의사 진단제도 (행정인력)

1 행정인력 업무절차 (출장진단 의료기관)



1 출장진단 의사 배정신청 절차

- ① 입원병원 및 심사 대상자 리스트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문자로 수신함
- ② 입 퇴원 관리시스템 (www.amis.go.kr)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입원병원 및 대상자의 정보 확인
- ③ 출장진단 가능한 전문의와 방문가능일 파악
- ④ 입원병원 및 대상자 정보를 출장진단 의사에게 고지
- ⑤ 배정된 출장진단 의사에게 출장일정 통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주 이내 판정이 어려울 경우, → 입원병원에 이를 통보해야 함.

* (부득이한 사정) 해당지역 정신의료기관 또는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2 방문진단 시 협조

방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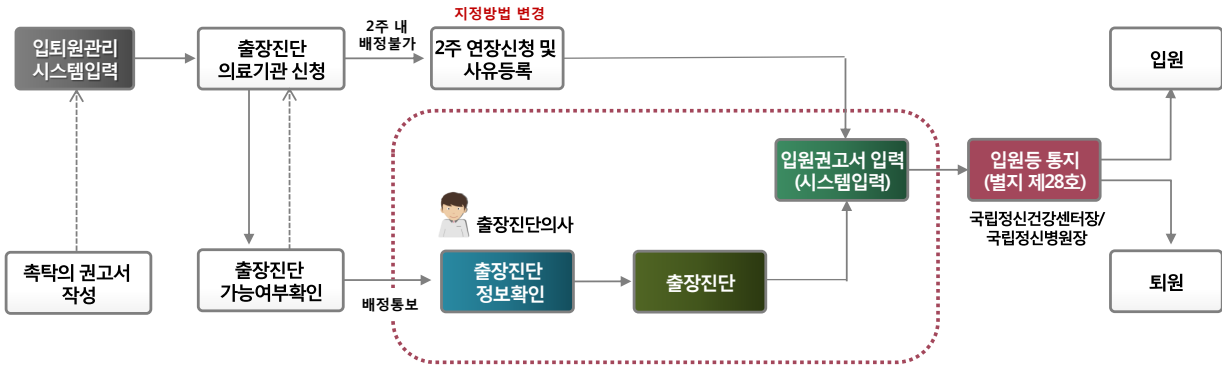
- 출장진단 의사의 정보를 입원병원에 고지
- 출장진단 업무가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관리

방문 후

- ① 출장진단 의사의 입원권고서(별지 제25호) 입력여부 점검
- ② 출장진단 의사가 서명한 입원권고서(별지 제25호) 원본을 보관 (※5년간 보관)

※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인력(대체근무자) 지정하여 정해진 담당자의 연락처, 근무부서를 시스템 운영자에게 고지

정신요양시설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는 축탁의 근무일에 대면평가 후 입소 가능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출장진단 정보확인	출장진단	입원권고서 입력	입원등 통지
준수기간	- 보호 입원 신고서 입력 (별지 제40호) ★ 입원 3일 이내 - 축탁의 권고서 등록	- 1차 전문의 소견 확인 ★ 입퇴원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 신분증 제시 - 관리대상 기록 및 서명 - 입원 권고서(별지 제25호)	- 이일까지 입원권고서 (별지 제25호) 입력 ★ 익일: 주말, 공휴일 제외	- 시스템을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또는 국립병원장이 입원 또는 퇴원 통지 ★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별지 제28호)
관련법령	보호입원 입원연장 요청 (입퇴원시스템 화면 구성 중)	- (필요시 사전요청) 보호의무자 및 의료진 면담	※ 입원권고서 작성기준 : 입퇴원 매뉴얼 참조	- 권고서는 출력 후, 출장진단의사가 서명하여 출장진단의료기관에서 보관 (※ 보관기간5년)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1 출장진단의사 역할 및 보호

[참고] 출장진단의사 역할

- 출장진단의사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 입원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국립정신건강센터장/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별지 제25호-시스템입력)
- 출장진단의사의 역할은 의학적 진단과 소견제출에 한정



[참고] 출장진단의사 보호

- 출장진단의사는 관할지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 최종소견 통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병원장이 입원 혹은 퇴원을 통지하므로 출장진단의사의 부담을 최소화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병원장



정신의료기관의 장

• 법적 책임

-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대면진찰 결과인 입원 진단에 대해 형사상 감죄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8429판결 대법원 201078 선고 2007도15886판결

• 산재보험 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인 전문의는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함(이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전문의가 진단을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정상적인 순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
- 환자의 특성상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진료)과정에서 환자로부터 가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2 출장진단

출장진단정보확인

출장진단

진단소견등록

1 방문 전 준비

- ① 입원병원 및 출장진단 대상자 정보를 안내 받음
- ② 입 퇴원 관리시스템(www.amis.go.kr) 공인인증서 및 개인 식별코드 (아이디 및 패스워드) 로그인
 - 1차 소견 확인, 보호의무자 및 의료진 면담 필요 시 사전 요청
- ③ 준비물품 : 신분증, 입원권고서(별지 제25호), 방문병원주소, 출장진단대상자명단

2 방문

- ① 입원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시
- ② 출장진단의사 방문 관리대장에 시간 기록 후, 서명
- ③ 안내에 따라 마련된 장소에서 환자를 대면진단 진행

3 대면진단 진행

※ 별지제25호

- **최초입원(입원 2주 이내) 대상자의 진단내용**
 - 증상평가, 치료의 필요성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 평가
- **입원연장 대상자의 진단내용**
(최초입원 대상자의 진단내용과 동일하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진단)
 - 자기관리능력의 장애 및 이로 인한 증상 및 신체질환 악화가능성
 - 병식 및 다른 형태로의 치료전환 가능성
 -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검토

4 대면진단 종료

- ① 대면진단 종료 시, 마감시간을 방문관리대장에 기록 후 서명
- ② 익일까지 입원권고서(별지 제25호)를 시스템에 입력
 - ※ 익일 : 주말, 공휴일 제외
- ③ 입력한 입원권고서는 출력 후, 출장진단의사가 서명하여
출장진단의료기관에서 5년간 보관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2 출장진단의사 고려사항

1 방문 전 준비

- ① 주치의 및 보호자와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이전에 입원병원 담당자에게 요청

2 방문

- ① 입원병원 치료진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무기록 열람
 - 환자의 증상 및 현재상태 파악
- ② 환자와 면담 시 자신의 소속과 이름 소개하지 않고
출장진단의사라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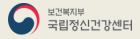
3 대면진단 진행

- ① 면담대상자가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금단, 진정, 격리, 강박 등) 입원병원 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입원등권고서' 작성
- ② 면담의 전 과정에서 출장진단의사 보호(입원병원 담당자 협조)
- ③ 면담에 필요한 환자의 입원관련 서류 확인은 필수가 아니며 요청할 경우 입원병원에서 협조가능

4 대면진단 종료

- ① 출장진단의사는 대상자에 대해서 확보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입원등 권고서'를 작성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2-1 출장진단 최초입원(입원 2주 이내)



방문진단 시 진단내용 _ 입퇴원 매뉴얼 발체

- 증상평가 및 치료의 필요성
- 환각/망상/흥분 및 충동성/우울, 무기력 및 정신운동지체/조 증/의식장애 또는 혼미/행동조절장애 등 정신의학적 영역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 해당 영역에 체크함.

※ 치료의 필요성은 [치료 및 영양의 필요성 평가 기준표] 참고
- 단,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하며, 임상사사의 전문적 소견이 중요함

1. 정상	없음
2. 정상과 병의 경계	낮음
3. 경도의 병	
4. 중등도의 병	보통
5. 심각한 병	높음
6. 매우 심각한 병	
7. 극히 심각한 병	아주 높음

[참고] 서식 ※ 별지 제25호

[()] 입원 등, [()] 입원 등, 기간 연장 권고서

()에 표시된 서식을 하고, 글자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표시된 소견서, 진찰서, 진찰기록 등용 필드를 꼭 작성하십시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급여 1종 () 보철 () 급여 2종 () 기타
성별	() 남 () 여	연락처 02-1234567 010-8888-9999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101동 102호	
내담이 된 주 호소	치매양상 및 폭력, 간헐적인 폭력성	
급회 입원/입원 등 기간 연장(예정) 일자	입원 등 필수(다른 기록 입력한 후) 소견서 2회	※ 정보의뢰이 다른 업무 목적으로 사용
2017년 9월 10일		

입원유형	() 보조입원 등 () 행정입원 등 () 응급입원
진단명(ICD-10)	조현병
증상 (복수체크 가능)	() 환각 () 망상 () 흥분, 충동성 ()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 조울상태 () 의식장애, 혼미 () 주의집중장애 () 기타 ()
서식 수정 예정	a. 안전-건강 위험여부() 있음 () 없음 () 파악하기 어려움 b. 타해 위험여부() 있음 () 없음 () 파악하기 어려움 c. 가족과 연관된 피해양상으로 인해 간헐적인 폭력과 폭력성이 있으며, 내원 당일에도 난폭한 행동으로 본인에 상해함.
최종소견	() 입원 등/입원 등 기간 연장 필요 () 퇴원 등 필요

2017년 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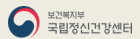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면허번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36652 소속기관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55조에 따라 입원 등 및 입원 등 기간 연장 관련 소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 국립정신병원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군·구청장 7인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2-1 출장진단 최초입원(입원 2주 이내)



방문진단 시 진단내용 [별표13]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1호 질병에 관한 기준	2호 증상에 관한 기준
- 조증,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 환각, 망상, 흥분 및 공격성
- 조현병, 분열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	- 의식장애 및 혼미
-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의 중독성 장애	-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 기질성 정신장애, 인격장애 등	- 고양감, 들뜬 기분, 충동성

3호 자신의 건강 안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성 기준

- 자살/자해 시도, 및 압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 증상의 악화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물질적 피해위험
-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험행위, 성적 문제행동 등 타인의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 방화, 기물파손, 타인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감을 주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참고 판단의 방법

- 제 1호, 제 2호, 제 3호의 각 기준과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
- 기왕력, 현 병력과 이와 관련된 행위 및 증상을 고려하여 판단

[참고] 입퇴원 매뉴얼 발체

※ 타해의 경우 아래의 폭력위험의 판단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음

1. 혼란스러운(형질수설 또는 지남력 상실상태)	① 없음 ① 있음
2. 예민함(쉽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인 상태)	① 없음 ① 있음
3. 시끄러움(소리가 크게 나거나 소란스러움을 유발)	① 없음 ① 있음
4. 신체 위협(공격적인 자세)	① 없음 ① 있음
5. 언어 위협(협박 또는 위협하는 말)	① 없음 ① 있음
6. 물건 공격(물건에 대한 폭력 행위)	① 없음 ① 있음

▶ 6문항의 점수 합계 2점 이상일 경우 폭력의 가능성이 높음

출장진단의사의 입원권고서 입력

- 입원권고서의 서식에 준해 대면진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후, 최종소견을 '입원 필요' 또는 '퇴원 필요'로 평정하여 입력
- ※ 입퇴원매뉴얼 참고

2-2 출장진단 입원 연장



방문진단 시 진단내용

- 서류작성 및 절차 등은 입원 2주 시점에서의 2인 진단과 동일
- 정신의학적 상태 및 자신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타인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동일한 관점으로 수행하되, [참고]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정

출장진단의사의 입원권고서 입력

- 입원권고서의 서식에 준해 대면진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후, 최종소견을 '입원연장 필요' 또는 '퇴원 필요'로 평정하여 입력
※ 입퇴원매뉴얼 참고

[참고]

1 자기관리능력의 장애 및 이로 인한 증상 및 신체질환 악화 가능성

- 환자의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장애가 높고 사회적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 시설에서의 관리지원이 불확실한 경우, 기존 증상 및 신체질환의 악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

2 병식 및 다른 형태로의 치료전환 가능성

- ① 병에 대한 인식
- ② 외래통원치료 및 자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
- ※ 병식 및 다른 형태로의 전환 가능성 평가는 병동 관찰 기록 및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 기준에 준용하여 평정할 수 있음.

3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검토

- ① 지역사회복지 시 보호의무를 맡아줄 사람
- ② 거주 가능한 주택 또는 입소시설 여부
- ③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2인 의사 진단 제도

3교시

입·퇴원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

입·퇴원 관련 벌칙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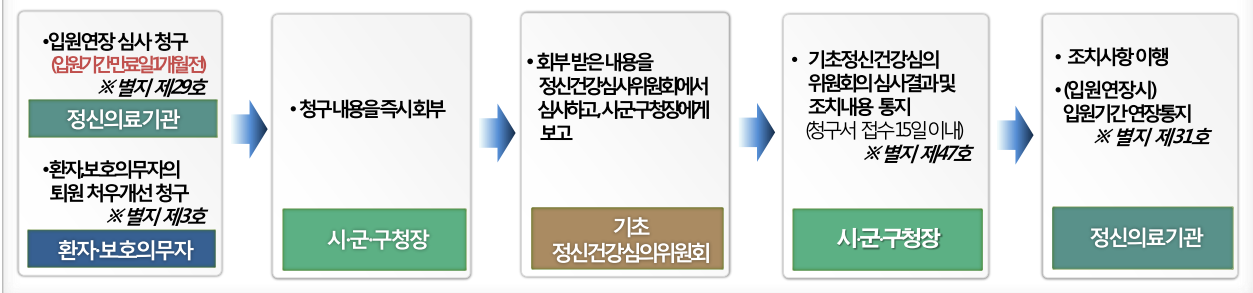
- 설치**
 - 광역 - 시·도
 - 기초 - 시·군·구
- 구성**
 - 광역 - 10~20명
 - 기초 - 6~12명
 - (위원장) 시·군·구의 과장 또는 보건소장
 - (위원) 정신과전문의, 법조인, 전문요원, 가족 등
- 운영** 월 1회 이상
- 기능**
 - 광역 - 정신건강증진시설 감독
 - 심사결과 불복 또는 기간 내 미심사 시 재심사
 -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 시 재심사
 - 기초 - 보호입원 기간 연장심사
 - 행정입원 기간 연장심사
 - 퇴원 또는 처우개선심사
 - 외래치료 명령

정신건강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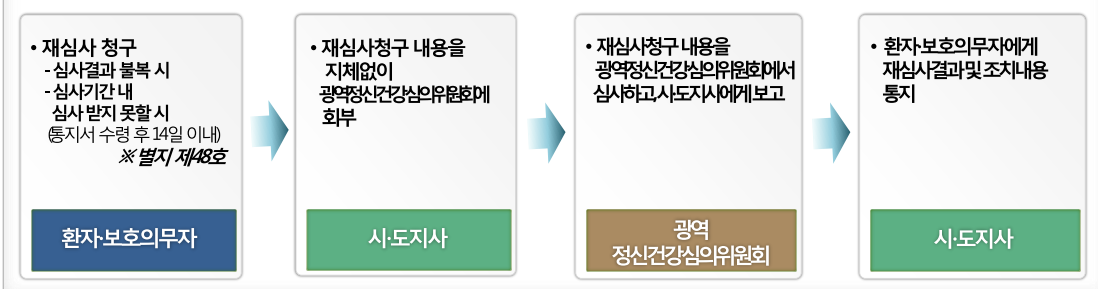
- 설치**
 - 광역 - 시도
 - 기초 - 시·군·구
- 구성** 심의위원 중 5~9명
- 운영** 월 1회 이상
- 기능**
 - 입원연장 심사
 - 퇴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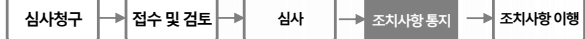
입원연장 심사 및 퇴원 처우개선 청구



재심사 청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4 조치내용 통지 (시·군·구청장)



통지기한

- 사군구청장이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 통지
-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조치내용

- ① 퇴원
- ② 임시퇴원
- ③ 3개월 이내 재심사
- ④ 다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로 이송
- ⑤ 자의입원으로 전환
- ⑥ 동의입원으로 전환
- ⑦ 외래치료명령
- ⑧ 입원 기간 연장
- ⑨ 계속 입원 연장
- ⑩ 처우개선 조치명령

[참고] 서식

※ 별지 제47호

참고 조치사항

퇴원 또는 임시퇴원 명령

-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72시간 이내) 퇴원
- 입원 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시퇴원 가능
- 임시 퇴원을 시키고 사·군 구청장에게 통보

외래치료 명령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년 이내의 범위 내 명령
- 외래치료 명령청구서(별지제50호) 외래치료명령 소견서(별지제50호), 환자 의견진술서(별지 제26호)

3개월 이내 재심사

- 재심사를 통지받은 정신의료기관은 3개월 내에 사·군 구청장에게 입원기간 연장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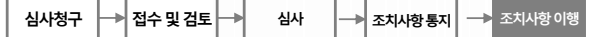
타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 이송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함

• 기타

- ①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명령
- 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 전환
- ③ 입원 기간연장 결정
- ④ 계속 입원 결정

5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통지확인 및 안내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된 심사결과명령서 및 조치내용 통지서 확인
- 통지서를 받은 즉시 심사대상자에게 전달

조치사항

- 입원 기간이 연장된 경우
 -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
 -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 통지서(별지 제1호)
- 퇴원명령 통지
 - 지체 없이(72시간 이내) 퇴원

재심사 청구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심사결과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별지 제8호)

[참고] 서식

※ 별지 제48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본청 신청인은 []에 구호를 받고, 구체적으로 적실함을 증명한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801234-2345678 (남, 64)	02-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101층 102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명	801234-2345678 (남, 64)	02-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101층 102호	

신청인

재심사대상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청구번호: 호)

[]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제2항의 죄책처분명령에 대한 불복

입원명령 기관서식 [] 범죄경력판결명령

주소 [] 관공서 과장급 응급구조 127

■ 재심사 청구내용 [] 불합용

(의수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 [] 다른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이송

[] 가의입원명 또는 응급입원명 등으로 전환

[] 퇴원명 추 회택처분명령

[] 차후개심

■ 재심사 청구사유 [] 심사의뢰 중 양자충당 구 없음

■ 환자 의견진술서 [] 양이 없는데, 기록장이 내용 적기로 명명해 명서 넣음

취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해 불복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2018년 5월 20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성명 [] 장대영 (02-1234-5678)

신·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하위표지 각 서식 중 미사용 항목은 제외하여 제출하십시오.

첨부 1. 심사결과명령서 및 조치내용 통지서 (통지 받은 입원명 및 입원기간 연장 통지서 사본 1부(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수수로

> 입원명 연장사유명세서 또는 최원준 최후개심사유명세서 사본 1부(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 응급처분명령 통지서 사본 1부(응급처분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 100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18년 5. 30.부터 시행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① 설치: 국립정신병원 등
- ② 구성: 10-30명
- ③ 운영: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 ④ 기능: 입원적합성 심사접수 및 소위원회로 회부

2 입원심사소위원회

- ① 설치: 국립정신병원 등
- ② 구성: 5-10명
- ③ 운영: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 ④ 기능: 비자의(보호, 행정입원) 입원적합성 심사

※ 관할지역

-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립나주병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국립춘천병원: 강원도
-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2인 의사 진단 제도

입·퇴원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

3교시

입·퇴원 관련 벌칙

입퇴원 관련 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자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등

- ✓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 퇴원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 ✓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의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정신의료기관등의장

입퇴원 관련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신고 내용 및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 환자가 퇴원등을 한 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삭제

보건복지부장관

입퇴원 관련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 ✓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처리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공유·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누구든지

질의사항은 질의응답지를 통해 안내 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지는 국립정신병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 <http://www.ncmh.gov.kr>

국립나주병원 : <http://www.najumh.gov.kr>

국립부곡병원 : <http://www.bgnmh.gov.kr>

국립춘천병원 : <http://www.cnmh.gov.kr>

국립공주병원 : <http://www.knmh.gov.kr>